

건축허가 협의부서와 협의조건 · 보완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PART1 - 협의조건 편)

S A F E T Y

P R E V E N T I O N

M A N A G E M E N T

S T R U C T U R E

용인시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

발행취지

건축허가는 건축물을 안전하게 축조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사용자가 건축물을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의 적합성, 거주환경의 편의성, 설비의 합리성 등 복합요건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건축허가 단계부터 건축규모와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규제하고 있는 법령들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고 적재적소에 맞는 부서와 협의를 시행하여 저축여부를 판단해야지만 빠르고 정확한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용인시에서는 다수의 구청허가 건을 분석하여, 다양한 변수에 따라 발생했던 각종 협의조건을 취합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허가권자와 설계자가 협의조건을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또한 자주 발생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협의부서와 보완요구사항도 정리하여 설계자가 건축허가 접수 시 관계부서에 대한 보완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해보았습니다.

본 안내서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도 부단히 노력하겠으니 현장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허가 협의부서와 협의조건 · 보완에 관한 기술지원 가이드라인

발행일: 2023. 4.

기획·편집: 용인시청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팀

전화: 031-324-3411

홈페이지: <https://www.yongin.go.kr>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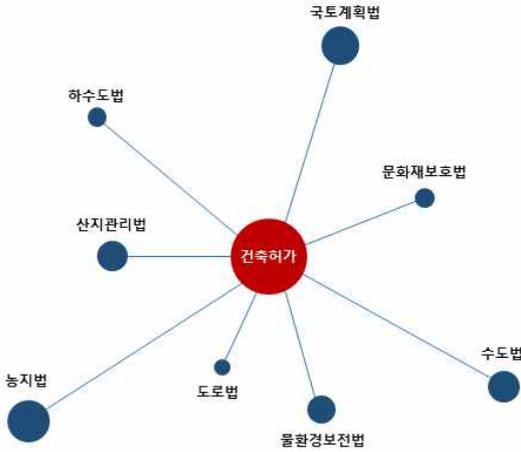
PART 1				
들어가기 전 안내사항	-----	4	민원지적과	----- 37
도시기획단	-----	5	사회복지과	----- 39
시민안전관	-----	7	산업과	----- 40
정보통신과	-----	9	환경위생과 (산업환경과)	----- 41
문화예술과	-----	10	교통과	----- 44
관광과	-----	12	도시미관과	----- 45
재산관리과	-----	13	건설과	----- 47
징수과	-----	14	도로과	----- 51
기업지원과	-----	15	차량등록사무소	----- 53
농업정책과	-----	16	환경과	----- 54
산림과	-----	18	기후대기과	----- 58
도시정책과	-----	19	자원순환과	----- 60
도시개발과	-----	21	공원조성과	----- 62
도시재생과	-----	22	수도시설과	----- 64
토지정보과	-----	23	하수행정과	----- 65
교통정책과	-----	25	하수시설과	----- 66
대중교통과 · 도시철도과	-----	28	하수운영과	----- 68
건설정책과	-----	2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69
도로관리과	-----	30	광주시 수질정책과	----- 71
생태하천과	-----	32	용인소방서	----- 72
반도체산업과	-----	33	한국부동산원	----- 73
산단입지과	-----	34	군부대	----- 74
자치행정과	-----	35	용인경찰서	----- 75

한국전력공사	-----	76	한국농어촌공사	-----	86
경기도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78	한국자산관리공사	-----	88
경기도 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	80	경기도 도로정책과	-----	89
경기도 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	81	국방시설본부	-----	90
한국도로공사	-----	82	한국수자원공사	-----	91
평택시 수도과	-----	83	한강유역환경청	-----	92
수원국토관리사무소	-----	84	경기도 건설본부	-----	93
경기도환경관리사무소	-----	85	경수고속도로(주)	-----	94

PART 1

들어가기 전 안내사항

1 협의목적



건축허가는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미관 등을 규제하고 있는 「건축법」과 별도로 건축물의 대지, 용도, 급수, 배수 등 요건에 따라 복합법령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문제점

다음과 같은 경우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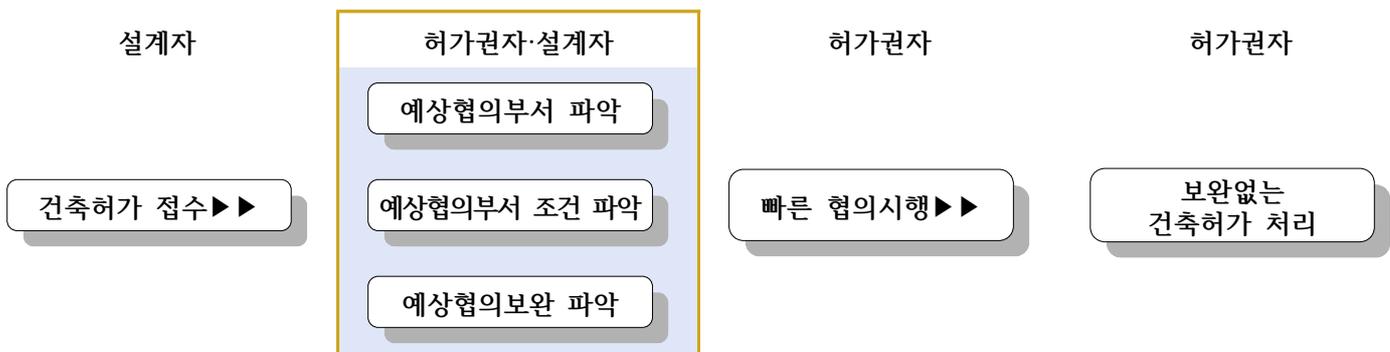
1. 건축규모와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협의를 시행할 부서가 다르므로 검토를 위한 시간지연
2. 협의를 시행하였으나, 타부서와 추가협의를 필요한 경우 시간 지연
3. 협의를 시행하였으나, 협의부서에서 보완을 요구하여 시간 지연

3 개선사항

2022년 3개구청 300건의 건축허가 건을 대상으로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의제 협의제외)을 취합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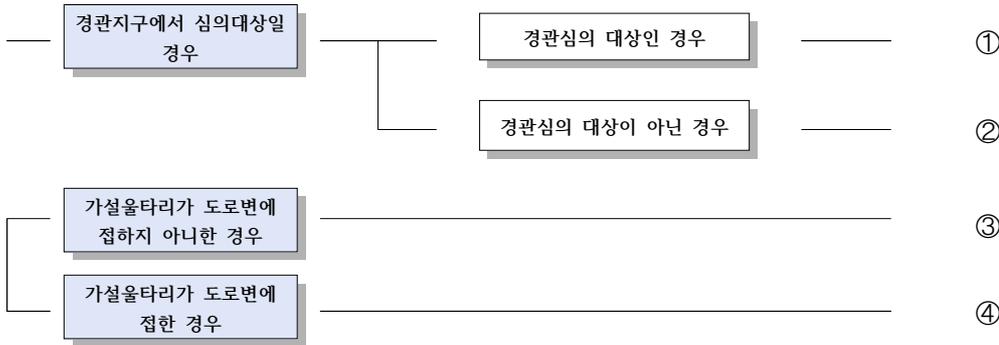
협의부서별로 자주발생한 보완사항을 취합하였습니다.

건축규모별로 협의시행한 부서를 취합했습니다.



1 협의목적

- 경관심의 대상 여부 및 용인시경관계획에 대한 「경관법」 협의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① 경관지구에서 심의대상일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하신 2022년 제9회 경관소위원회심의 결과를 이행하시고, 사용승인 신청 시 이행확인(건축물 경관심의 반영 여부 및 의결사항에 대한 심의의결내용 이행결과 등)에 대한 감리자확인서(사진 포함)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경관조례」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3층 이상 또는 높이 11m 이상인 건축물로서 경관심의 대상입니다. 용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2030 용인시 경관계획 가이드라인」 '건축물 공통가이드라인(3~5쪽), 상업업무시설(10~11쪽)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광고산일대(22~27쪽)'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시어 경관심을 건축허가 전에 득하시기 바랍니다.
② 경관지구에서 심의대상이 아닐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2030 용인시 경관계획 가이드라인」 '건축물 공통가이드라인(3~5쪽), 단독주택(6~7쪽)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광고산일대(22~27쪽)'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경관정책팀] ○ 「2030 용인시 경관계획 가이드라인」'건축물 가이드라인(건축물 공통가이드라인(p3~5) 및 공동주택(p8~9))"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 용인시경관심의 기준(용인시 고시 제2019-644호) 및 용인시 에어컨 실외기 설치기준(용인시 고시 제2020-594호)을 검토하여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건축설비(에어컨실외기 등)의 외부노출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2030 용인시 경관계획 가이드라인」 건축물 공통가이드라인(3~5쪽), 상업업무시설(10~11쪽)'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 용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2030 용인시 경관계획 가이드라인」 건축물 공통가이드라인(3~5쪽), 상업업무시설(10~11쪽)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김량장동일대(26~27쪽)'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③ 가설울타리가 도로면에 접하지 않았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공사현장은 가설울타리가 도로면에 접해 있지 않거나 외부로 노출되는 구간이 협소하므로 가설울타리 디자인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 용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용인시 공사안내표시 디자인가이드라인(p16~17)」에 맞춰 공사장게이트(설치시), 공사안내표시(필수) 디자인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용인시 홈페이지 「용인시 공사안내표시(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 게재 게시물 참고) ○ 착공고시, 디자인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공사장게이트, 공사안내표시 설치한 사진을 반드시 세움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가설울타리가 도로면에 접하였을 경우

[공공디자인팀]

-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용인시 공사장안내표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가설울타리 계획안을 세움터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용인시 홈페이지 「용인시 공사안내표시(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 게재 게시물 참고)
- 본 공사현장은 인접 도로(중부대로, 신구로), 보행로와 접한 구간에 '용인상징색'을 적용한 계획안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장게이트(설치시), 공사안내표시는 '용인시 공사장안내표시 디자인가이드라인(P16~17)'를 참고하셔서 계획안 작성하셔야 합니다.
- 착공신고 전 가설울타리 설치가 완료되어야 하며 가설울타리 설치 후 협의 이행 결과서(현장사진 포함)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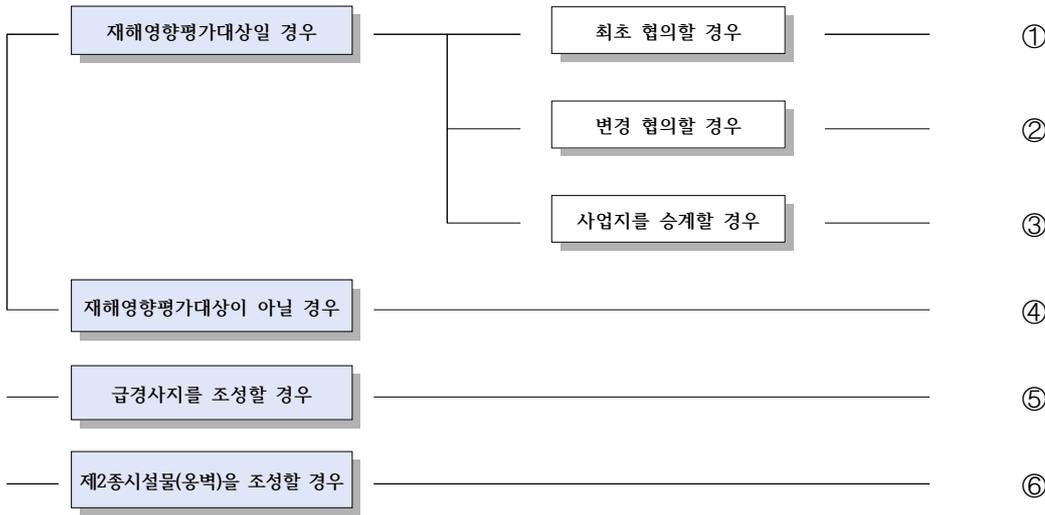
대표 관계법령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건축법」 제16조에 따라 규모를 변경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4. 15, 2018. 5. 14, 2019. 10. 10>

1. 경관지구의 건축물로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별표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공공건축물로 별표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건축물로 별표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기존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10분의 3 이상 증축하는 경우

1 협의목적

- 재해영향평가 대상 여부에 대한 「자연재해대책법」 협의
- 급경사지 조성에 따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협의
- 제2종시설물 대상 옹벽조성에 대한 「시설물안전법」 협의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① 최초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한 경우	○ 사업시행자 및 관계행정기관의장(개발사업의 허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 개발사업의 승인 부서장)은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의무 행정조치사항」(붙임1)을 이행할 것.
②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변경협의 할 경우	<p><자연재난팀></p> <p>○ 당초 개발행위허가 시의 재해영향평가(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항(조지계획, 변경이행계획 포함)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p> <p>※ 향후 토지이용계획, 피해방지계획, 옹벽/사면 계획, 우수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이 변경 될 경우, 인허가부서는 변경 허가 전 변경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우리부서와 별도 협의 할 것. (변경이행계획서 제출 또는 재해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 검토 필요)"</p>
③ 자연재해영향평가 대상 사업지를 승계한 경우	○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승계한 사업시행자는 의무의 승계를 위한 협의 내용 이행상황과 승계 사유 등 승계한날로부터 30일 이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우리 부서에 통보할 것
④ 자연재해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	<p>자연재난팀(김진규)-조건부가</p> <p>○ 현재까지 신청 된 사업 계획에 따르면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이 아니지만,</p> <p>○ 진입로의 형상으로 보아 인접부지 추가 개발이 예상되므로 향후 해당부지 및 인접부지 추가 개발 신청(신축, 변경) 시 우리부서와 별도 재협의 할 것.</p> <p>※ 금회 신청 사업과 개발, 운영, 관리 등이 연관되어 실질적으로 동일성 있어 같은 사업자로 인정 되고 합산 면적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임.</p>

⑤	급경사지를 조성한 경우	<p>○ 안전점검팀-조건부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급경사지를 조성한자는 사업을 준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토질조사 자료(공사를 위하여 수행된 지표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조사 등) ② 준공도서(공사를 위하여 처음 생성된 급경사지)③ 현황자료(유지관리 위하여) 2. 같은 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급경사지 관련 준공도서의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3. 단, 사업부지내 시설물중 도로법 제11조의 고속국도 및 같은법 제12조의 일반국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은 제외 됨.
---	--------------	--

⑥	제2종시설물(옹벽)을 조성한 경우	<p>○ 시설물안전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부지 내에 있는 시설물 옹벽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제2종 시설물이 해당되므로 사업주체는 시설물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등록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시설물안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업부지 내 제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등(준공 또는 사용승인시 제출), 시설물관리대장(준공 또는 사용승인시 제출) 및 감리보고서(준공 또는 사용승인후 3개월 이내 제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제9조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	--------------------	---

3 대표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p>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p>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p>제20조(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체제의 구축) ①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인·허가등으로 급경사지를 조성한 자가 관련 사업을 준공한 때에는 준공도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p>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1 협의목적

- 6층이상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공사업법」 협의

6층이상 건축물

①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① 6층이상 건축물일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8조)에 의해 정보통신공사 감리대상 건축물임 ○ 정보통신 설계도면 검토를 마쳤다는 사유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통신설비 시공이 허용되는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대표 관계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해야 하는 공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사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1 협의목적

- 지하에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호조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①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대상 규모 건설현장

②

일반사항

③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5조 및 제6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부지 변경 및 실사용 면적 증가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주거지역의 경우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외곽 200m안쪽으로 한함) 밖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변경허가 대상 아님. - 이외에 사업시행 중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사 이전에 변경허가를 받을 것. - 문화재 주변 행위허가사항대로 사업을 시행할 것. - 착수(완료)한 경우에는 문화예술과에 문화재 주변 행위허가에 대한 착수(완료) 신고를 반드시 할 것.(허가서 참조) - 허가기간 만료 전까지 사업완료가 어려운 경우 기간연장 변경허가를 받을 것.(기간연장 미실시하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함.)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5조 및 제6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산리 지석묘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속하나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계획대로 시행 가능함.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17조 및 제5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조어제 체제공 뇌문비 및 체제공 선생 묘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속하나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계획대로 시행 가능함.
②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대상 규모 건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공전(별목, 철거, 토목공사 등 지형변경행위) 매장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따라야 함. - 조사 후 결과보고서를 문화예술과에 제출
③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시행 중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문화예술과에 신고 조치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지시 등)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지시 등)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광과

1 협의목적

- 야영장 및 관광휴게시설 건축에 대한 「관광진흥법」 시설 설치기준 협의

용도가 관광휴게시설		①
용도가 야영장		②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① 용도가 관광휴게시설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변경등록 절차를 이행 할 것(건축물 사용승인 전)
② 용도가 야영장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등록 절차를 이행 할 것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따른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별표7)에 맞게 설치할 것 ○ 야영장내 설치하는 건축물(관리동, 화장실, 대피소, 샤워실, 취사시설 등)은 건축법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야영장시설로 할 것 ○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미만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3 대표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협의목적

- 사업지에 용인시 소관 재산이 포함될 경우 용도폐지 및 매각여부 협의

대지내 공유재산이 포함될 경우 _____ ①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① 대지 내 공유재산이 포함될 경우	○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503-1외 6필지와 관련하여,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503-18,19,20번지/3필지는 소유권 이전 (22.8.30 등기이전) 된 것으로 확인되며, 우리시 공유재산인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503-10, 11, 12번지(3필지)는 소관 재산관리관인 교통건설국 건설정책과와 별도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1 협의목적

- 지방세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대상 협의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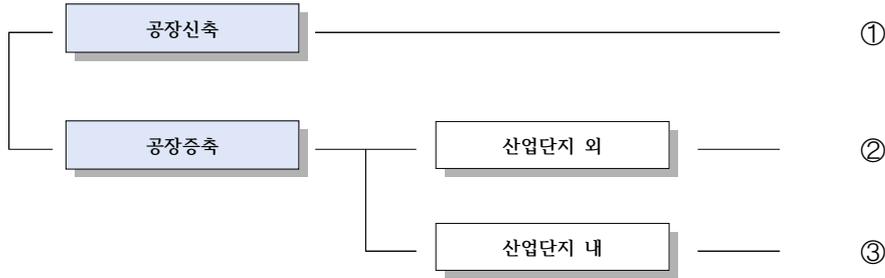
변수	협의조건
① 건축주 체납이 없을 경우	○ 건축주 체납없음으로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 제한]에 저촉되지 않음
② 건축주 체납이 있을 경우	○ 본 건축허가와 관련된 건축주 수탁자 코리아신탁(주) 위탁자 (주)○ 의 신탁재산의 지방세 체납금 160,380,990원에 대하여 건축허가 필증 교부 후 징수부서와 협의한 대로 지방세 체납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하는 조건부허가 가능

3 대표 관계법령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협의목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기준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① 500제곱미터 미만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대상이 아님
②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	○ 부대시설면적(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변경이 있는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신청하시기 바람 ○ 미신청시 동법 제55조(과태료)제2항 규정에 의해 과태료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장설립(증설)승인 시 승인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업종에 맞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③ 산업단지 내 증축인 경우	○ 산업단지 내로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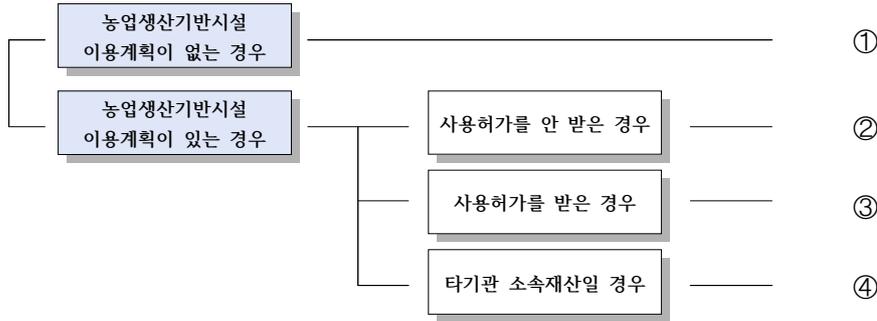
3 대표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의목적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계획이 수반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협의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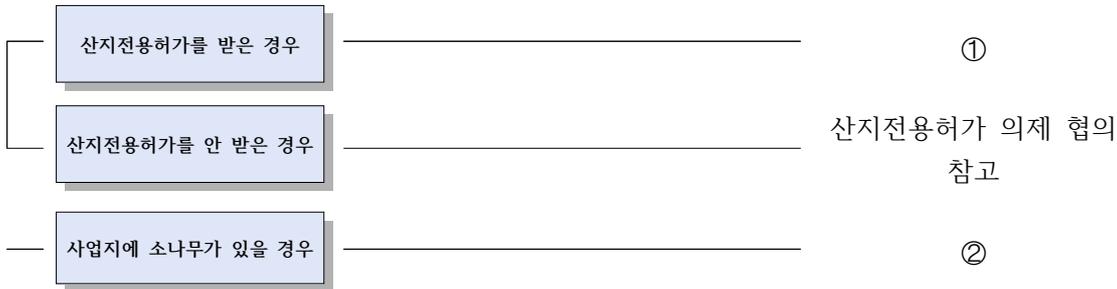
변수	협의조건
① 농업생산기반시설 이용 계획이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반팀(국유재산법, 농어촌정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된 협의서류 상 사업구역 내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국유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존재로 별도 의견 없으나, -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재산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계획이 수반되는 경우 관련 도서 작성하여 허가 전 재협의할 것.
② 농업생산기반시설 이용 계획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반팀(농어촌정비법, 국유재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된 사업계획대로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구거에 대하여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착공 전까지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득할 것.(국유재산법 제46조에 저촉되지 않을 것) - 다만, 허가 검토 과정에서 점용 면적 등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용허가 전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므로 관계 주민 의견 반영하여 사업 계획 수립할 것. -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중 도시계획도로시설과 중복되는 구역은 도로부서와 별도 협의 할 것.
③ 기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반팀(농어촌정비법, 국유재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제 2022-486호(2022.09.05)조건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허가기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만료 1개월전까지 연장신청 하여야 함. 기타 허가조건은 허가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허가 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허가조건 준수하고, 공사계획 및 수허가자 등 허가관련사항 변경 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허가 변경 절차 이행할 것.
④ 타기관 소속재산일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반팀(농어촌정비법, 국유재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된 협의서류 상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련 협의사항 없음.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중 (소)하천구역과 중복되는 구역은 하천부서와 별도 협의 할 것. - 인접지 기준구거 및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에 대하여 본래의 목적 및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 -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재산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계획이 수반되는 경우 관련도서 작성하여 허가 전 재협의할 것. ○ 농업기반팀(농어촌정비법, 국유재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된 협의서류 상 방아리 784-2번지 및 산72-2번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시설 및 재산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와 별도협의 할 것.

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협의목적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협의
- 산지전용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협의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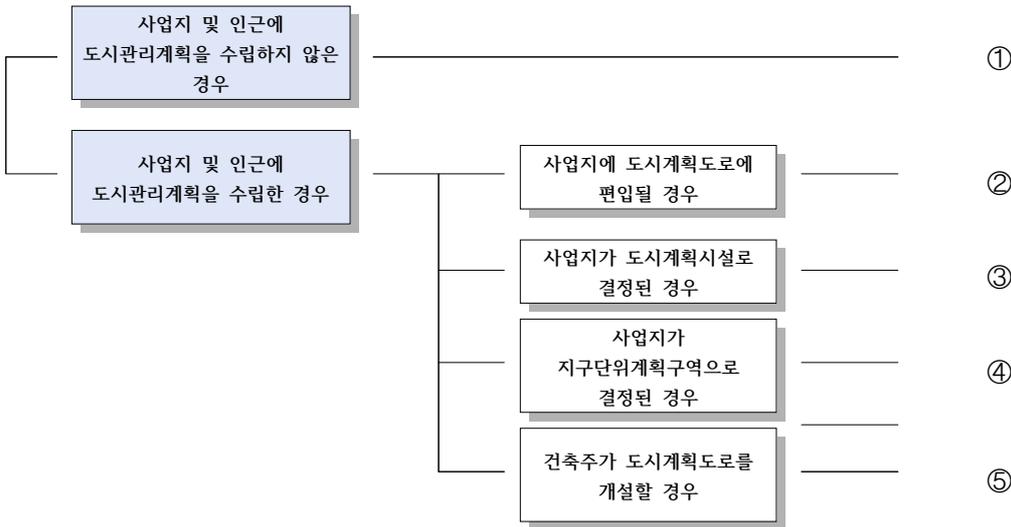
변수	협의조건
① 기 산지전용허가 협의 완료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관리법 - 세종-포천(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시 부여한 산지전용협의 조건을 이행하고, 금회 계획에 따라 산지전용 변경사항 발생 시 재협의(의제)하시기 바랍니다. <p>[산지관리법]신청지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목적으로 기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 의제)를 득한 부지로, 당초 산지전용협의 조건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p>
② 사업지에 소나무가 있을 시	<p>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산지전용 등의 신청신고 서류 등)에 의거 산지전용(일시사용) 등을 하려는 대상지에 소나무류가 없는 경우로 해당없음.</p> <p>※ 변경 등으로 대상지에 소나무류가 포함될 경우 재협의할 것.</p>

3 대표 관계법령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산지전용등의 신청·신고 서류 등) ①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을 신청·신고 할 때 재선충병방제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등을 하려는 산지에 소나무류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협의목적

- 사업지가 도시계획도로 예정지에 편입될 경우 「국토계획법」 협의
- 사업지가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된 경우 「국토계획법」 협의
- 사업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을 경우 「국토계획법」 협의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① 사업지 및 인근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행정팀 : (가)의견없음 ○ 도시계획팀 : (가)의견없음 ○ 지구단위팀 : (가)의견없음
② 사업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계획2팀 : (조건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분할하여 시설에 저촉되지 않도록 할 것. ○ 시설계획2팀: (조건가)도시계획도로(소2-34호)에 대하여 분할하여 시설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부지 내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 가능하니 관련기관(부서)와 별도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계획1팀 : (조건가)신청지 진출입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중2-105호)은 현재 사업시행부서(도로관리과)에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중으로 사업시행부서와 공사계획에 대하여 별도 협의하여 도시계획시설에 저촉없도록 할 것. ○ 시설계획1팀 : (조건가)신청지 인접 도시계획시설(도로:소2-72호)은 현재 사업시행부서(기흥구 도로과)에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중으로 사업시행부서와 공사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 도시계획시설에 저촉없도록 할 것. ○ 도시계획팀 : (조건가)신청지 진출입도로[도시계획시설(도로:소2-155호)]는 현재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시행 중으로 사업시행부서(기흥구 도로과)와 공사계획에 대하여 별도협의 할 것. ○ 시설계획1팀: (조건가) 신청지 진출입도로[도시계획시설(도로:중2-157호)]는 현재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시행 중으로 사업시행부서(기흥구 도로과)와 공사계획에 대하여 별도협의 할 것. ○ 시설계획1팀 : (조건가)도시계획도로 중3-177호선에서의 진출입 또는 우수관로, 오수관로, 상수관로 연결에 대해 해당 도로의 시행부서인 용인시 도로관리과와 별도 협의할 것 ○ 시설계획1팀 : (조건가)도시계획도로 소로 1-69호선의 우오수관로 연결에 대해서는 해당도로의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수지구 건설도로과와 별도 협의할 것 ○ 시설계획2팀 : (조건가) 도시계획시설(도로:중1-45호)에 저촉없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진출입 관련하여 사업부서인 도로관리과와 별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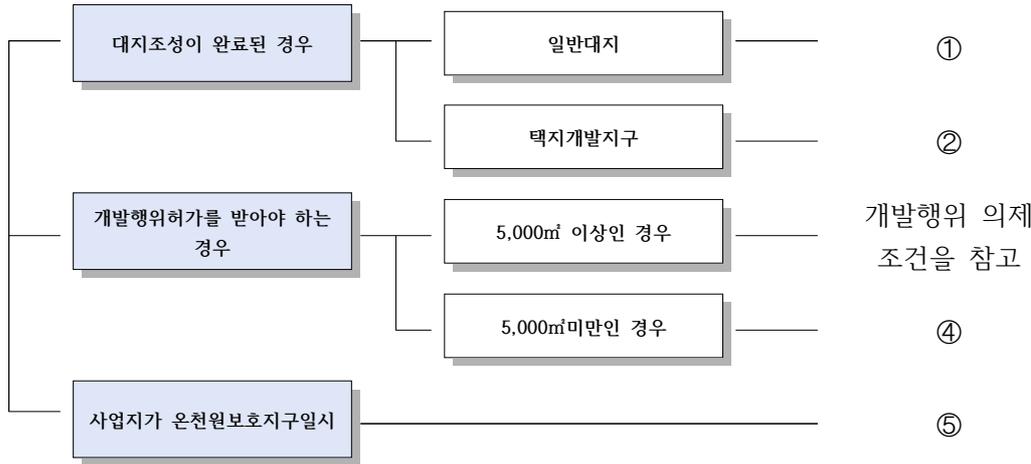
③	사업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경우	<p>시설계획1팀 : (조건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부지는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결정된 부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부지인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같은법 제5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등의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합니다 ○ 해당 위치가 1단계 또는 2단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인지에 대하여 사업부서(공원조성과)와 별도 협의하시고, 개발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해당부서와 별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동법 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을 경우, 그 사업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소유자의 부담으로 공작물의 철거 등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④	사업지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일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팀 : (조건가)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도시재생과와 별도 협의할 것.
⑤	건축주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계획1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시설의 착공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을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득할 것

3 대표 관계법령

「국토계획법」
제64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협의목적

- 사업지가 택지개발지구 내 있을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협의
- 형질변경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개발행위허가가 수반될 경우 협의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① 대지가 조성이 완료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터파기, 포장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님. 다만, 사업계획 변경으로 터파기를 제외한 50cm 이상 절토 및 성토가 발생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득하여야 함.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의3 1호에 따라 건폐율 기준 이내로 별도 증축 가능함. 다만,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터파기, 포장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건축물 증축시 터파기를 제외한 50cm 이상 절토 및 성토가 발생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득하여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자연녹지지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입지 가능하며, 신청지는 도로구역으로 해당 시설 관리 기관과 별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지가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개발촉진법 :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로 용인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기흥구 건축허가1과와 별도 협의 하시기 바람.
④ 5,000제곱미터 이하 개발행위허가일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면적 5,000m² 미만으로 용인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처인구청 건축허가1과와 별도 협의하시기 바람.
⑤ 사업지가 온천원보호지구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회 신청된 급수계획서 상 상수도 사용 계획으로 별도의건 없음. 온천법 제15조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에서 지하수를 개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대표 관계법령

「국토계획법」

제93조의3(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제93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공장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장의 소유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해당 공장에 허용된 건폐율

1 협의목적

- 사업지가 정비구역안에 있을 경우 「도시정비법」 협의

대지가 정비구역 내일 경우

①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① 대지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림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공사중으로 진출입로 및 상하수도 연결 등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공사 일정에 맞추어 건축 공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사업자인 용인도시공사(☎330-3982)와 별도 협의 할 것. ○ 지구단위계획 세부 및 기타사항 대해서는 고림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및 지침 내용 준수할 것.

1 협의목적

- 신축, 증축, 재축할 경우 건물번호 부여 「도로명주소법」 협의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일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협의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 지적·공간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 저촉없음 ○ 공간정보: 저촉없음
① 신축일 경우 도로명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명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자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전까지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도로명주소법」제12조제2항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거주 및 활동의 종료 등으로 인하여 건물번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철거 등)에는 건물번호 폐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건축물대장을 말소한 경우는 제외) - 「도로명주소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구분하여 임대하기 위하여 상세주소를 부여받고자 할 때에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 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를 제출(건축부서에서 토지정보과로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 이첩)하시기 바랍니다.
② 증축일 경우 도로명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명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이미 설치한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망실 훼손된 경우 건물번호판을 제작하여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③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일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연접)이며, - 개발사업 인.허가 준공(임시사용승인, 허가 취소 및 사업 면적 축소 포함)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내역서를 토지정보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해태(지연) 및 미제출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④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닐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리며, -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 용도변경 또는 연접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각 사업의 토지 합산면적이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이상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개발부담팀 ☎031-324-2744)

「도로명주소법」

제11조(건물번호의 부여) ① 건물등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자는 건물등에 대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검사 등을 말한다) 전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건물등의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임차인(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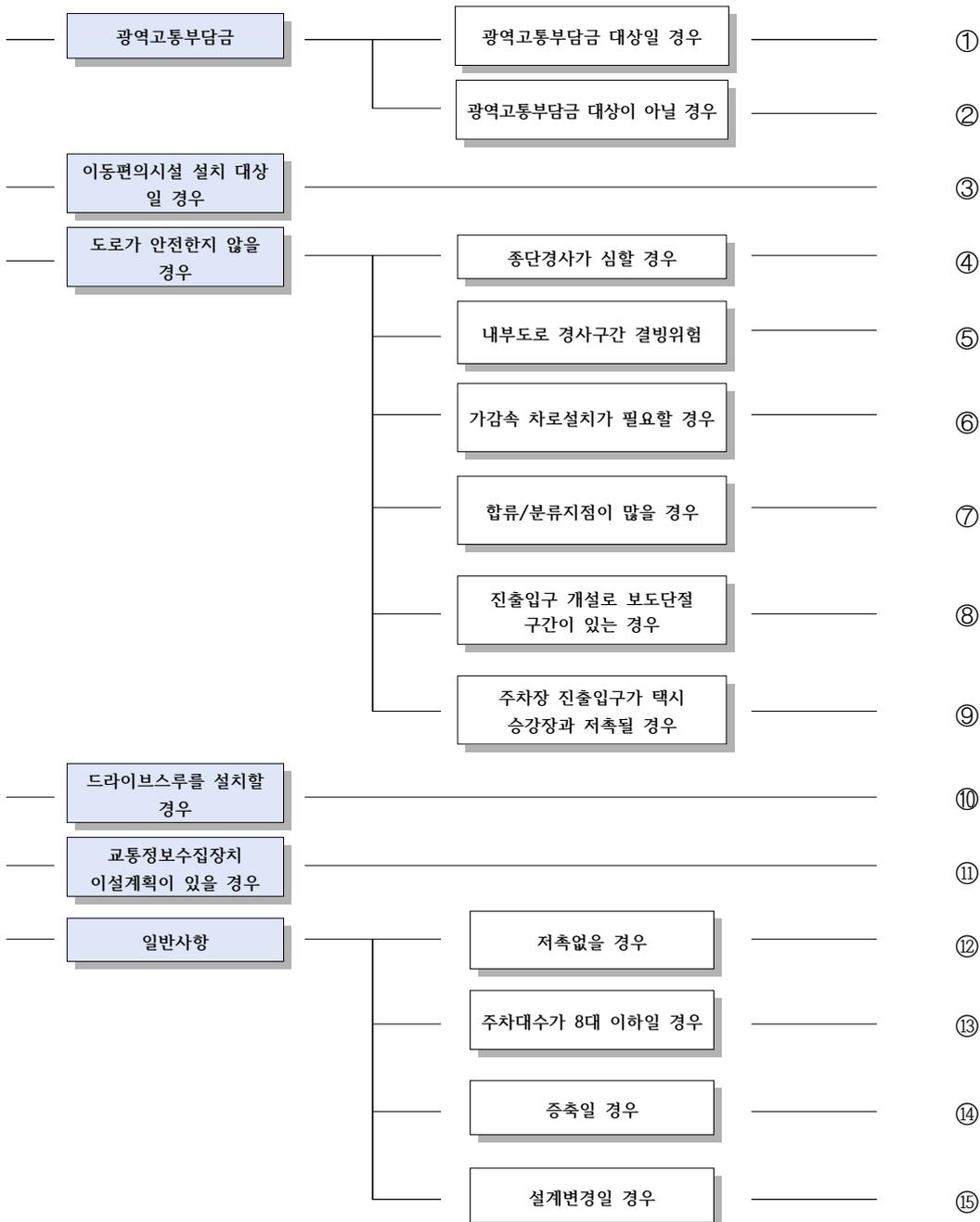
제5조(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교통정책과

1 협의목적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설치대상에 대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협의
-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대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협의
-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대한 「주차장법」 협의



변수	협의조건
① 광역교통부담금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사업자에게 부과대상사업임을 알리고 공제 및 감면관련 교통정책과로 문의토록 안내하시기 바라며, 허가 신청 및 최종 허가시에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분양(전용)면적표를 세움터에 등록할 것. ▷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준공 및 사용승인 전 반드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완납여부를 확인할 것
② 광역교통부담금 대상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행정팀(324-33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가능)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부과대상: 동일건축물 주택 20세대 이상, 주택시설 외 다른시설 포함) - (조건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1조(별표1)의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도로 [보도], 버스정류장 등) 설치 시 동법 시행규칙 제2조1항(별표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보도 유효폭(1.2~2.0m) 확보, 경사도 기준(8.3%이하), 점자블록, 턱낮춤 시행, 볼라드 설치시 세부기준, 버스정류장 세부사항 등]을 준수할 것
③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 건축물일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행정팀(324-33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1조(별표1)의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도로 [보도], 버스정류장 등) 설치 시 동법 시행규칙 제2조1항(별표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보도 유효폭(1.2~2.0m) 확보, 경사도 기준(8.3%이하), 점자블록, 턱낮춤 시행, 볼라드 설치시 세부기준, 버스정류장 세부사항 등]을 준수할 것 ○ 교통행정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가능) 당초 보완의견 반영 확인함(용인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자문검토, 2022.09.26.) - (조건가)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적합한 설치 여부에 대하여 용인시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070-4173-3566)의 현장점검을 받으시기 바람
④ 종단경사가 심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행정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 앞 도로는 종단경사가 심한 구간임을 감안하여 진출입 차량의 안전한 가·감속을 위한 진출입구 완화차로 설치를 검토하고, 가·감속차로 및 도로점용 등 도로의 구조 및 시설은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에 관한 규칙』, 『용인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수하고 세부사항은 도로관리청(부서)과 별도 협의하시기 바람.
⑤ 내부도로 경사구간 결빙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개선팀(324-33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가) 사업지 내부도로(진입도로 포함)의 경사로 구간에 겨울철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미끄럼방지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시공 바람.
⑥ 가감속차로설치가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개선팀(324-33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가) 사업지 진출입도로와 접하는 지점 가감속차로설치를 검토하고, 가감속차로 및 도로점용 등 도로의 구조 및 시설은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에 관한 규칙』, 『용인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수하고 세부사항은 도로관리청(부서)과 별도 협의하시기 바람
⑦ 합류/분류 지점이 많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개선팀(324-33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가) 사업지 진출입동선 상 차량 합류/분류 지점이 많아 운전자 혼란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삼거리 190-4번지 앞 교통체계에 대하여 관할경찰서와 사전협의 후 협의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 필요.
⑧ 진출입구 개설로 보도단절구간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개선팀(324-33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가) 차량진출입구 개설로 보도 단절구간이 발생할 경우 횡단보도 설치 요망.
⑨ 주차장 진출입구가 택시승강장과 저속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개선팀(324-3328)(조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치도면 통해 당초 보완의견 반영 확인함<당초의견 : "차량진출입구 개설로 인한 보도 단절구간에 횡단보도 설치"> - 주차장 진출입구 위치가 택시승강장과 저속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 대중교통과와 별도 협의하시기 바람.
⑩ 드라이브 스루 건축물일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개선팀(조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깔유도선 설치 등 노면표시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 드라이브스루 이용에 따른 대기열이 증가할 경우 사업지 인근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지내 교통관리 요원 배치 등 교통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교통개선팀(324-33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 진입부의 주차와 DT 동선을 색깔유도선 통해 구분 - 사업지 진입부와 연결되는 차로는 백옥대로1313번길에서 우회전진출하는 차량의 가속차로로도 사용되므로, 진입부에 계획한 안전지대 노면표시 삭제 검토

<p>⑪ 교통정보수집장치 이설 계획이 있을 경우</p>	<p>○ 교통정보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가) 건축물 신축에 따른 교통정보수집장치(VDS) 이설전 사전협의(☎324-2328) 필요 * 건축물 신축에 따른 모든 시설물 이설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함 * 영상검지기 설정(세팅) 및 성능평가비용 등 이설과 관련된 모든 비용에 대하여 원인자가 부담함 - 이설전 지중관로 선통 확인 후 지중관로 재포설과 관련된 현장조사 필요 - 시설물 이설시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버스정보시스템(BIS) 통신자가망을 비롯해 각종 현장시스템이 전기/통신케이블 등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부서 협의 하에 시공 - 지중관로 재포설 및 교통(버스)정보시스템 운영 중단 최소화를 위한 야간 작업 진행 - 시설물 이설 시 교통소통대책 수립과 이설 후 주변 정리로 민원 최소화 - 시설물 이설 완료 후 관련 시설물의 정상작동 여부 및 기타사항을 확인 후 건축사용승인 신청 - 공사의 원만한 수행과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실제 작업 시 사전 통보하여 관련자가 입회하에 시공
<p>⑫ 일반사항</p>	<p>○ 교통개선팀(324-33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가) 교통안전시설물[교통신호기, 노면표시(중앙선 절선 등), 표지판 등] 설치·변경·제거 시 교통정책 및 관할경찰서와 사전 협의하고, 협의결과는 「도로교통법」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매뉴얼』을 준수하여 사업 계획에 반영. - (조건가) 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제어기,차선,표지판,횡단보도 등) 인수인계 시 관할경찰서와 협의 선행 후 관련 공문(각종 시험성적서,전기요금 납부증명서 등) 포함하여 인수인계 절차 별도 이행 * 교통안전시설물 신규 설치시 교통안전시설물관리시스템(http://tgis.yongin.go.kr) 등록요망 <p>▷ 주차운영팀(324-33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및「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상 법정주차대수 확보하여 저촉사항 없음.
<p>⑬ 주차대수 8대 이하인 경우</p>	<p>▷ 주차운영팀(324-3325)(허가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대 이하 주차장 예외규정에 따라 보차 구분이 없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일 경우에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으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 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하므로 이를 준수할 것. <p>▷ 주차운영팀(324-33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1조제5항에 따라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에만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구획을 배치할 수 있으며 출입구 너비 3미터 이상 확보해야 하므로 이를 준수할 것
<p>⑭ 증축일 경우</p>	<p>▷ 주차운영팀(324-3325)(허가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및「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상 저촉사항 없으나 - 다음 증축 시 금회 증축으로 증가하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0.5대 이상일 경우 법정주차대수 산정에 추가 반영할 것
<p>⑮ 설계변경일 경우</p>	<p>▷ 주차운영팀(324-33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허가받은 주차면수와 달리 금회 건축허가(변경)에 따라 추가되는 주차단위구획이 있을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시행 2019. 3.1.) 부칙 제3조에 따라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따른 직각 주차단위구획(2.5mX5.0m)의 너비 길이를 적용하여 세움터에 반영하시기 바람.

3 대표 관계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①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을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다만,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대중교통과

건설교통국

- └ 교통정책과
- └ 대중교통과
- └ 도시철도과
- └ 건설정책과
- └ 도로관리과
- └ 생태하천과
- └ 물류화물과

1 협의목적

- 진출입로 개설에 따른 택시승강장 철거 및 이전 협의

택시승강장 이설 계획이 있을 경우

①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① 사업지 내 택시승강장을 철거할 경우	기존 설치된 택시 승강장(노면표시, 표지판)을 원인자 부담으로 철거

도시철도과

건설교통국

- └ 교통정책과
- └ 대중교통과
- └ 도시철도과
- └ 건설정책과
- └ 도로관리과
- └ 생태하천과
- └ 물류화물과

1 협의목적

- 사업지가 철도보호지구인 경우 「철도안전법」에 따른 행위신고 대상여부 협의

사업지가 철도보호지구인 경우

①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① 사업지가 철도보호지구인 경우	신청부지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 및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고시 제218-331호) 제5조에 따라 착공 전 "철도보호지구내 행위신고"를 득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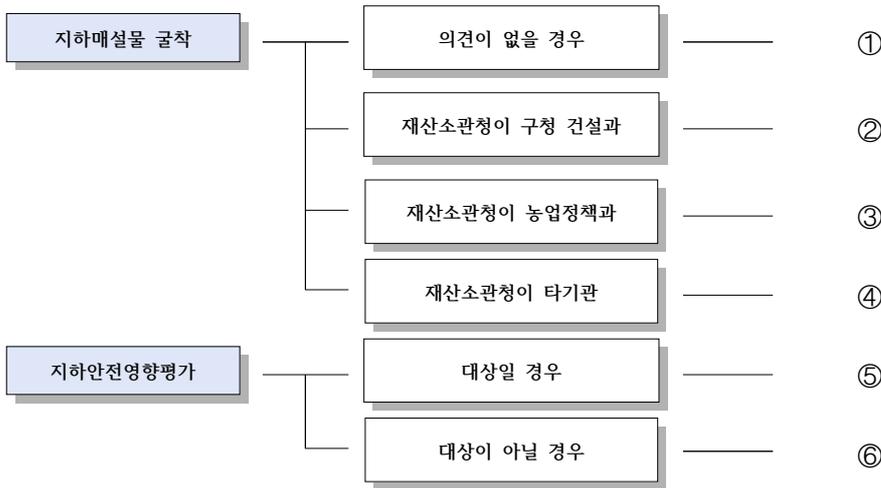
건설정책과

건설교통국

- └ 교통정책과
- └ 대중교통과
- └ 도시철도과
- └ 건설정책과
- └ 도로관리과
- └ 생태하천과
- └ 물류화물과

1 협의목적

- 「도로법」에 따른 진출입로 및 지하매설물 굴착 협의
- 지하안전영향평가에 대상에 대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협의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① 일반사항	○ 도로계획 324-2433 : 의견없음 ○ 도로재산 324-2438 : 의견없음
② 도로관리청이 구청소관일 경우	○ 도로재산 324-2438 : 진출입로 및 지하매설물 굴착등과 관련하여 관할구청 건설과와 협의할 것
③ 재산관리청이 타부서일 경우	○ 도로재산 324-2438 : 지하매설물 굴착과 관련하여 해당 재산관리관(농업정책과)과 별도 협의할 것
④ 재산관리청이 타기관일 경우	○ 도로재산 324-2438 : 지하매설물 굴착등과 관련하여 해당 재산관리관(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과 별도 협의할 것 ○ 도로계획 신청부지는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지방도 321호선(매산~일산) 확포장공사구간 일원으로 진출입로 계획에 대하여 경기도 건설본부(도로건설과)와 별도 협의 할 것.
⑤ 지하안전평가 대상일 경우	○ 지하안전관리 324-2947 : (조건부 허가) 사업부지 내 원지반고에서 최대 굴착 깊이가 10m 이상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지하안전평가의 요청시기 등을 확인하여 기한 내 요청할 것. ※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협의 요청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를 확인할 것.
⑥ 지하안전평가 대상이 아닐 경우	○ 지하안전관리 324-2947 : 의견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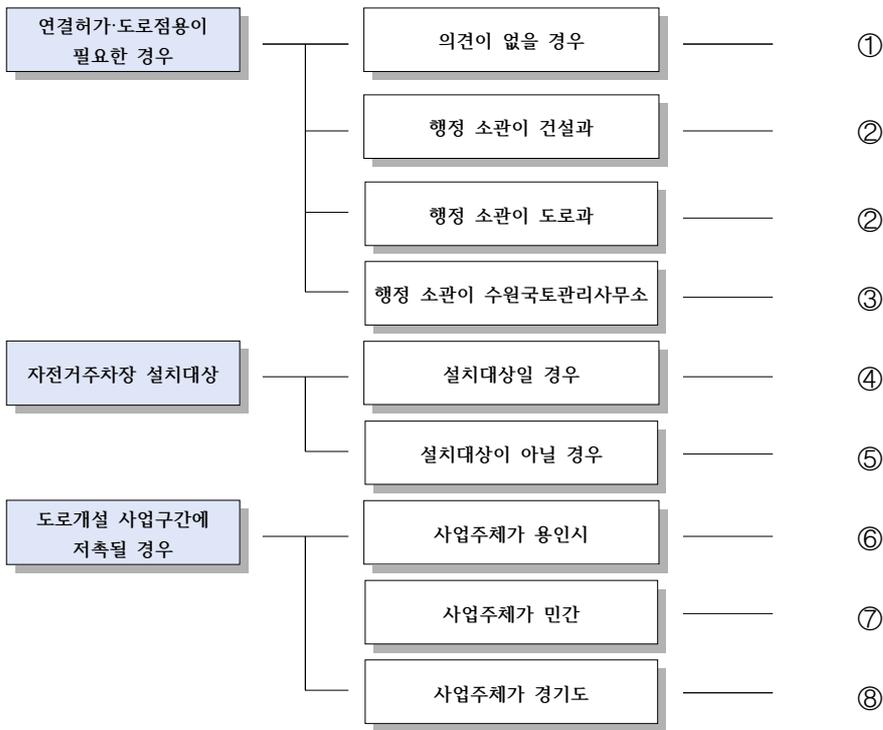
3 대표 관계법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할 때에는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 및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협의목적

-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 연결허가 협의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협의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①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건설(324-3319) : 의견없음 ○ 도로보상(324-2428) : 의견없음
② 사업시행자 및 관리기관이 타부서일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정비 : 연결허가와 관련하여 구청 건설과 별도 협의할 것. ○ 도로정비 324-2435 : 도로점용 등 관련 사항은 관할 구청 건설과와 별도 협의할 것. ○ 도로정비: 연결허가와 관련하여 처인구 건설과 별도 협의할 것 ○ 도로건설 324-2431: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62호 교차로 개설예정구간으로 사업시행자인 기흥구 도로과와 별도 협의 할 것.
③ 관리기관이 타기관일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정비(324-2435) : 도로굴착 및 점용 등 관련 사항은 도로관리청(수원국토관리사무소)와 별도 협의할 것.
④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정비 324-2435: 조건부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캐노피, 공기주입기, 자전거주차장 표지판 포함)을 설치 검토하고, 해당 사항이 있을(자전거 거치대 설치)시 우리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 협의 후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도로법」등 준수하여 설

치할 것.

<p>⑤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야 할 경우</p>	<p>○ 도로정비(324-2435) : 의견없음</p>
<p>⑥ 소관 사업시행구간에 저촉될 경우</p>	<p>○ 도로건설: 조건가 신청지 진출입로는 우리시에서 공사 중인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45호 개설공사" 구간 내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로계획에 맞춰 진출입 계획을 수립하고, 진출입 구간 도로점용과 관련한 사항은 처인구청 건설과와 별도 협의할 것. 지하매설물(상하수도 등) 공사 전 도로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부서(감리사)와 반드시 사전 협의 후 공사시행하고, 중1-45호 개설 완료 후에는 도로점용허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p> <p>○ 도로건설 324-3319: 별도 의견없으나, 해당 신청지 인근 우리 부서에서 시행중인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2-105호)가 있는 바, 착공 전 우리 부서와 사전 협의하시기 바람.</p> <p>○ 도로건설(324-3319): 해당 건축물은 우리부서에서 추진중인 '용인 중3-177호'와 접한 구간으로 추후 착공시 우리 부서와 별도 협의 바람</p>
<p>⑦ 도시계획도로 사업시행자가 민간일 경우</p>	<p>○ 도로건설 324-3319: 용인도시계획시설(도로:중1-49호)와 접한 부분에 대하여 저촉여부는 보평2지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함.</p>
<p>⑧ 도시계획도로 사업시행자가 경기도일 경우</p>	<p>○ 도로건설 :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지방도 321호선(매산~일산) 확포장공사구간 일원으로 진출입로 계획에 대하여 경기도 건설본부(도로건설과)와 별도 협의 할 것. (반영)</p>

3 대표 관계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교통정책과
- ┆ 대중교통과
- ┆ 도시철도과
- ┆ 건설정책과
- ┆ 도로관리과
- ┆ 생태하천과
- ┆ 물류화물과

1 협의목적

- 하천구역에 행위제한에 대한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협의

의견이 없을 경우

①

사업지 인근 부서소관
공유재산이 있을 시

②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① 의견이 없을 경우	○ 하천시설팀/하천계획팀/하천행정팀 :의견 없음
② 사업지 인근 부서소관 공유재산이 있을 시	○ 하천행정팀 - 국공유재산관련법 : 생태하천과 소관 공유재산(348-1번지) 내 영구시설물 설치(콘크리트 포장 등)은 불가하며, 우수관 설치 및 점사용과 관련하여 기흥구청 건설과 하천관리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 협의목적

- 산업단지내 공장을 건축할 경우 「산업집적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기본계획 등 저촉여부 협의

사업지가 산업단지 내 일 경우

①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① 사업지가 산업단지 내 일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변경)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 및 관리기본계획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부대시설 목적으로 사용 시 저촉없음. ○ 입주(변경)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 및 관리기본계획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 협의목적

- 산업단지내 공장을 건축할 경우 「산업집적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기본계획 등 저촉여부 협의

사업지가 산업단지 내 일 경우

①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① 사업지가 산업단지 내 일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용인시 고시 제2021-503호(2021.09.13.)]을 준수하여야 하며, 향후 사업 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재협의할 것 ○ 준공 시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생태면적률), 건축물의 색채 등]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건축물 4면 및 옥상 사진, 조경 시공확인서류(시공 면적 포함) 등)를 제출할 것 ○ 폐수 관련은 환경과와 별도 협의할 것

- └ 자치행정과
- └ 민원지적과
- └ 사회복지과
- └ 산업과
- └ 환경위생과
- └ 교통과
- └ 도시미관과
- └ 건설과
- └ 도로과

1 협의목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완료 후 사용전검사 대상 건축물
-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대상의 시설설치 기준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① 정보통신공사 완료 후 사용전검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정보통신공사 완료 후 사용전검사를 받고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통신 설계도면 검토를 마쳤다는 사유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통신설비 시공이 허용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국선단자함 및 TV 장치함 바닥으로부터 30cm 이상 상단에 설치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대상 건축물이므로 공사완료 후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 - 맨홀은 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대지경계점내에 설치 - 정보통신설비 시공시 국선단자함 및 TV장치함은 반드시 도면과 같이 실내(현관문 안쪽)에 설치하시기 바라며, 건물 외벽, 필로티 외벽, 보일러실, 화장실, 세면실 등에 설치할 경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시 부적합 처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검토 결과를 적함으로 알려드리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지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공사 시공 시 준수사항: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방송통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주의사항: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9조에 의거 국선단자함 및 TV 장치함(main)은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실내 공용 구간에) 바닥으로부터 30cm 이상 상단에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구역에 설치할 수 없음 - 세면실, 화장실, 보일러실, 발전기계실, 분진 유해가스 및 부식증기를 접하는 장소, 소화 호수시설을 갖춘 벽장 내
② 사용전검사 면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및 제35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 수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로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검토 및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면제 ○ 증축 대상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는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 제외 대상 공사임. (정보통신공사업 시행령 제35조제1항)
③ 체육시설법에 따른 시설 운영계획	<p>[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검토] (문화체육팀) : 조건부 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건축물 내 시설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제1항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동법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제1항에 의거,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득하여야 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체육시설업의신고) 제1항에 의거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기 바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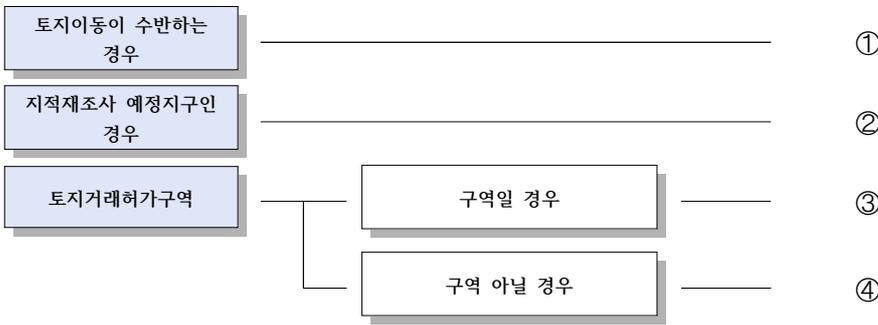
민원지적과

구청

- └ 자치행정과
- └ 민원지적과
- └ 사회복지과
- └ 산업과
- └ 환경위생과
- └ 교통과
- └ 도시미관과
- └ 건설과
- └ 도로과

1 협의목적

- 「공간정보법」에 따른 토지의 합병, 분할, 지목변경 협의
- 지적재조사사업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협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협의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① 토지이동이 수반될 경우	1. 토지의 이동(등록전환,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 건축물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토지이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2. 각종 인·허가 등이 내용과 다르게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변경된 토지의 현황대로 분할 하여야 하고 지적공부정리 신청시에 변경된 인허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3. 공사중 측량기준점 표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협의 하시기 바람 (☎031-324-5127 지적팀) 4. 측량기준점 표지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측량기준점 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이전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5. 동법 시행령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제1항에 의거 경계결정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별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② 지적재조사 예정지구인 경우	<지적재조사팀> ○ 지적재조사 예정지구로 사업지구 지정이 있는 경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완료 공고전까지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의 정지됨 다만, 같은법 제30조에 따라 기흥구 지적재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를 할 수 있음.
③ 토지거래허가구역일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함.(☎031-324-5136 부동산관리팀) ○ 외국인등 및 국내법인 단체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허가구역에 있는 주택용(단독, 공동, 주거용오피스)토지 취득시,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함.(☎031-324-5136)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의무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용목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 이용목적 변경승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031-324-5136 부동산관리팀) - 부동산관리팀 1. 해당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경기도 공고 제2020-1903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토지거래허가

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 및 국내 법인·단체가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에 대하여 10㎡(토지면적)을 초과할 경우 기흥구 민원지적과에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함.

※ 허가구역 지정 기간 : 2021.05.01~2022.04.30 (1년)

2. 아울러, 토지거래계약 허가 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 18조(이행강제금)에 의거 토지취득 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 이용의무기간 중 매년 1회에 한번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 ④ 토지거래허가구역가 아닐경우 (부동산관리팀)
- 토지거래허가 해당없음

3 대표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

제12조(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의 정지) ① 제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해당 지적재조사지구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하는 지적측량(이하 “경계복원측량”이라 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84조까지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이하 “지적공부정리”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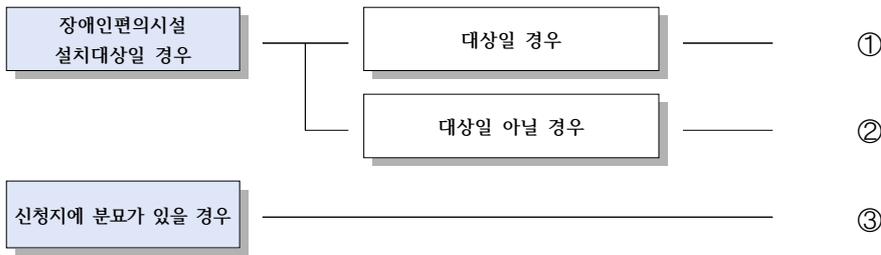
1.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경우
2.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를 하는 경우
3.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협의목적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 및 기준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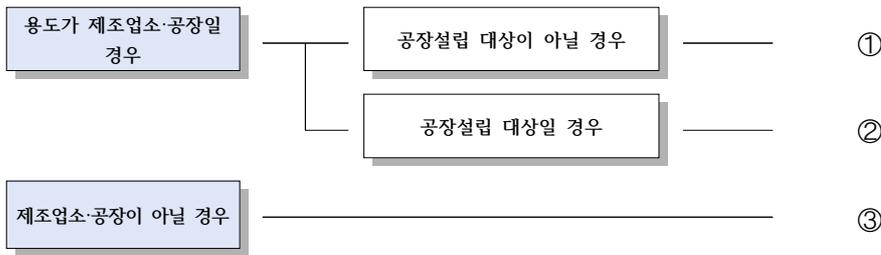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일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전에 시설물 설치에 따른 사전승인(점검)을 득하시기 바랍니다. ○ 장임법 : 조건부허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시설은 적절하게 설계되었다고 판단되며 사용승인 전 설치점검을 득하시기 바랍니다.
②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 아닐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검토한 결과,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아님. ※ 공장(공장-숙소)은 해당숙소를 이용하는 종업원이 30인 미만 이므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님.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은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님. - 운동시설(스크린골프연습장)은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편의시설 설치대상이 아님 - 당해 건축물은 상시고용근로자 50인 미만(15인) 시설로서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의거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님.
③ 신청지에 분묘가 있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사법 : 조건부허가 기존의 분묘가 있고 그 분묘에 이장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착공 전까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장신고 및 개장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존의 분묘가 있고 그 분묘에 이장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착공 전까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장신고 및 개장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묘지의 연고자를 알 수 있는 경우(유연분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 묘지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무연분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1 협의목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등록 협의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① 용도가 제조업소일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설립승인 대상 이외(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의 공장등록신청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추후 공장등록 신청(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제1항에 부합해야 하며,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기타관계법령에 저촉이 없을 경우 등록 가능함. ※ 공장건축면적 :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② 공장 증축일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회 증축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장의 등록)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장등록사항(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공장부지건축면적(감소의 경우만 해당), 부대시설면적, 업종, 세부업종변경사항)을 변경되는 경우 2개월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할 것.
③ 제조업소, 공장이 아닐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대상 아님

3 대표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장의 등록)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위생과(산업환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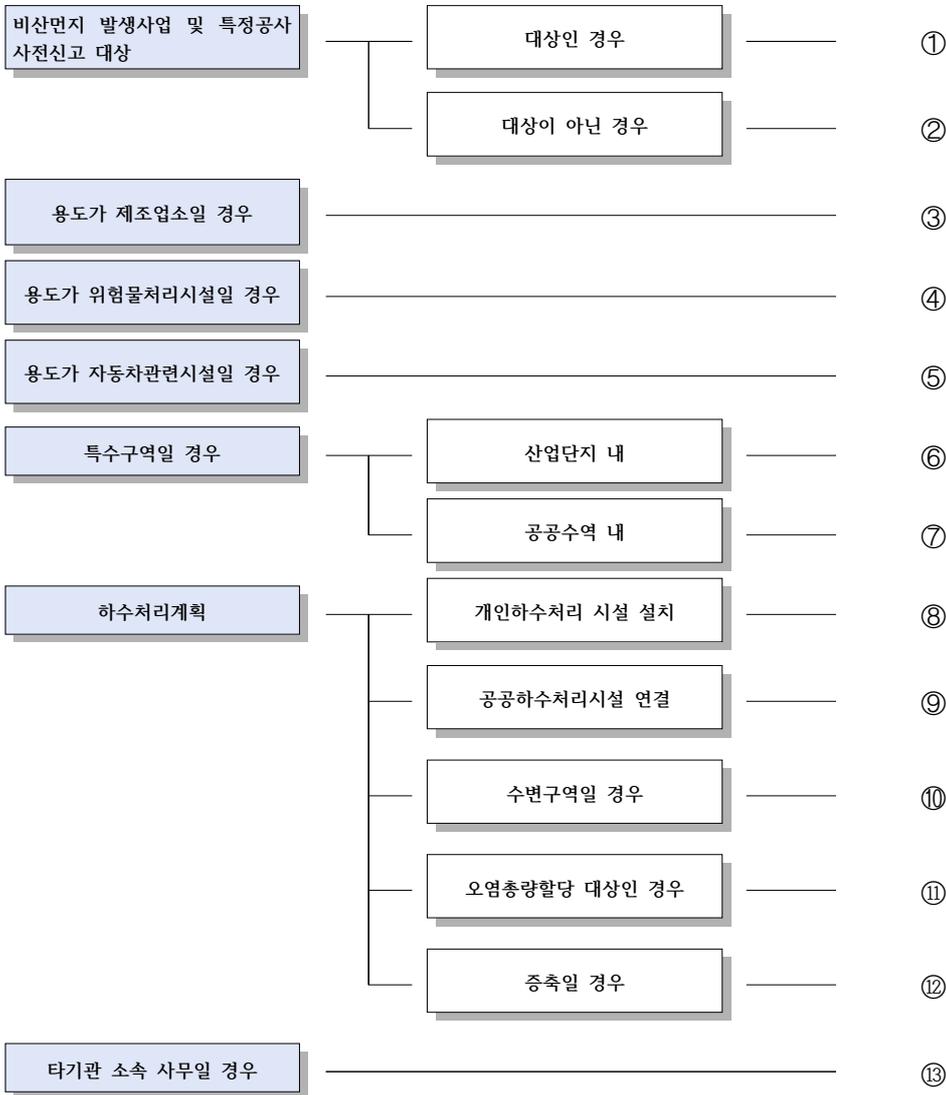
구청

- └ 자치행정과
- └ 민원지적과
- └ 사회복지과
- └ 산업과
- └ 환경위생과

- └ 교통과
- └ 도시미관과
- └ 건설과
- └ 도로과

1 협의목적

-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 대상 및 기준 협의
- 「소음진동관리법」에 대한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특정공사사전신고 대상 협의
- 「물환경보전법」에 대한 수질오염방지 기준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 기준 협의
-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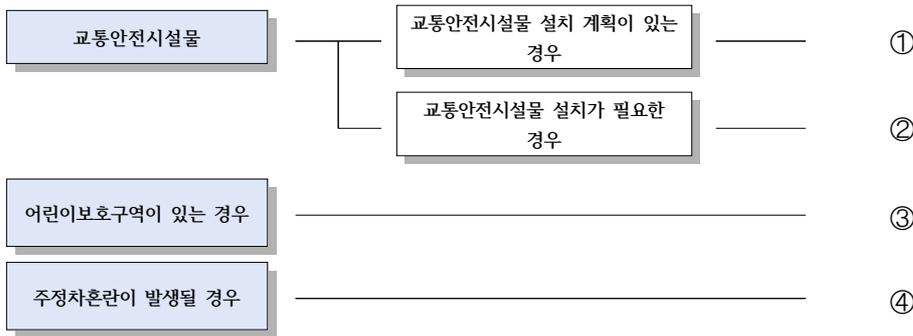


변수	협의조건
①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사전신고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환경보전법: 착공 전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득할 것 ○ 소음진동관리법: 착공 전 특정공사사전신고를 득할 것
②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사전신고 대상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 조건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 시 비산먼지발생 및 소음발생을 최소화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사업장을 관리하여야 함. 2. 또한, 연접(인접)부지와 토지 또는 건축주가 동일하고 연접부지를 포함하여 구조물의 용적합계나 공사면적 또는 연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 사업시행 전(공사 착공전)에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득하여야 함. 3. 공사장 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에 학교, 종합병원, 도서관, 공동주택, 입소규모 100명(병상을 갖춘 노인 대상)이상의 어린이집 및 요양병원 등이 있거나 국토법에 따른 주거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을 말한다) 안에서 특정 건설기계장비(굴삭기, 콘크리트 펌프 등)를 5일 이상 사용하려는 경우 착공 전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득할 것. ○ 물환경보전법: 조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시 강우로 인한 토사가 인근 하천으로 직유입되지 않도록 사업부지내 가배수로 및 침사지 등 설치계획,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침사지, 하천 오탁 방지막을 설치하여 시행할 것.
③ 용도가 제조업소일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조건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대로 대기,폐수,소음진동배출시설이 없는(기준미만) 조건으로 가하며, 향후 관계법에서 정한 대기,폐수,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의 설치 전 대기,폐수,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할 것. 이 경우 타법률에 의해 입지 제한될 수 있음. ○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 조건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공정 중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 및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별표3),「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별표4),「소음진동관리법」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별표1)의 대기·폐수·소음진동배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전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대상이므로,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시설물·기계·장비 및 공정 중 용수사용량 및 기계 세척여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역서(작업공정 포함)를 작성하여 재협의 할 것.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조건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조 관련 [별표3]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전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아야 함. 이 경우 타법률에 의해 입지 제한될 수 있음. 5. 소음진동배출시설(압축기 7.5Kw 이상) 설치 전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단, 타 법률에 따라 입지가 제한될 수 있음 5. 소음진동배출시설(프레스 및 인쇄기 등) 설치 전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단, 타 법률에 따라 입지가 제한될 수 있음.
④ 용도가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전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득할 것(단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제외)
⑤ 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일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환경보전법:조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운수장비 정비시설(200㎡이상)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설 설치 전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별도로 이행할 것. ○ 물환경보전법:조건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수배출시설(세차시설 등) 설치 전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단, 타 법률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등에 따라 입지가 제한될 수 있음.
⑥ 산업단지 내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환경보전법:조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 및 승인된 산업단지 부지 내로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사설 설치 전 경기도와 협의할 것. ○ 하수도법:조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테크노밸리 부지 내로 발생 오수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할 경우 저촉없음.(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지 않을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신고서(오수량산정표, 설계도면, 등록증사본, 여재·산기관인증서, 외벽보호계획도면 등 제반서류포함)를 첨부하여 재협의할 것)
⑦ 공공수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환경보전법:조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5조제4항을 준수할 것.(공공수역에 기준 이상의 토사 유출 금지)
⑧ 개인하수처리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도법(조건가) : 건축물사용 승인전 오수처리시설(2㎡/일)준공검사(매설전 사전검사)를 득할 것.(방류시설이 타인 소유지를 경유할 경우 토지주와 협의하여 분쟁발생이 없도록 할 것)

<p>⑨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처리할 경우</p>	<p>○ 하수도법: 조건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 오수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할 경우 저촉없음.(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지 않을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신고서(오수량산정표, 설계도면, 등록증사본, 여재? 산기관인증서, 외벽보호계획도면 등 제반서류 포함)를 첨부하여 재협의할 것)
<p>⑩ 수변구역에서 오수배출</p>	<p>○ 하수도법(조건가) : 수변구역으로 건축물사용 승인전 오수처리시설(4m³/일,bod 10ppm, ss 10ppm이하)준공검사(매설전 사전검사)를 득할 것.(방류시설이 타인 소유지를 경유할 경우 토지주와 협의하여 분쟁발생이 없도록 할 것)</p> <p>○ 하수도법:조건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사용 (임시)승인 전 설치신고 된 개인하수처리시설(BOD 및 SS를 10mg/L 이하 방류하는 2m³/일x1.10m³/일 x1.6m³/일x1) 준공검사(매설전 사전검사)를 득할 것.(처리시설 및 방류시설이 타인 소유지를 점유·경유할 경우 토지주와 협의하여 분쟁발생이 없도록 할 것) 단,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 단, 수변구역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이 불가하므로 행위제한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p>○ 하수도법: 조건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전 설치신고 된 개인하수처리시설(BOD유입농도 250mg/L, 4m³/일x1-수변구역) 준공검사(매설전 사전검사 실시 및 방류맨홀 설치)를 득할 것.(처리시설 및 방류시설이 타인 소유지를 점유경유할 경우 토지주와 협의하여 분쟁발생이 없도록 할 것.)
<p>⑪ 오염총량관리 대상인 사업장일 경우</p>	<p>○ 하수도법:조건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역개발부하량(BOD, T-P)을 할당받고 그 오염배출부하량을 준수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 오염총량 대상물질인 T-P를 추가(포함)하여 적정처리하여야 함.
<p>⑫ 증축일 경우</p>	<p>○ 하수도법:조건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축을 포함하여 발생하는 오수량(7.6m³/일)이 기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용량(10m³/일) 범위 내로 저촉없음. <p>○ 하수도법:조건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축으로 발생하는 오수량(42.5m³/일)이 기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용량(49m³/일) 범위 내로 저촉없음. <p>○ 하수도법:조건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축으로 발생하는 오수량이 기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용량(2m³/일) 범위 내로 저촉없으며, 해당 사업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역개발부하량(BOD, T-P)을 할당받고 그 오염배출부하량을 준수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 BOD 및 SS, T-P(2mg/L 이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p>○ 하수도법:조건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의 창고가 증축되는 사항으로 증축되는 부분에 수도배관 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오수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저촉없음
<p>⑬ 타기관 소속사무일 경우</p>	<p>○ 하수도법: 조건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수처리시설 용량 50m³/일(설치된 시설은 200m³/일) 이상의 시설로 유입처리하는 사항으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오수관리팀)와 협의할 것. <p>○ 하수도법:조건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하수처리시설 50m³/일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2,000m²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오수관리팀)와 협의할 것

1 협의목적

-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시설물 설치 기준 및 교통안전대책 협의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할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도로교통법 제7조(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 사업지 진출입구 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 표지판, 노면도색) 설치 및 이설변경 계획 경우 교통시설물설치 세부도면을 첨부하여 별도협의 바라며, 이외 사항은 용인동부경찰서와 교통정책과 협의의견에 따릅니다. *공사기간 사업지 진출입구 교통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추진 바랍니다. ○ 사업지 공사 중 주민안전, 교통사고예방 등의 교통안전대책 계획 수립 후 사업추진 바라며, 준공 전 교통 불편 민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등 증감이 필요한 경우 조치 요망. ○ 이외 사항은 관할 경찰서 별도협의 및 교통정책과 협의의견에 따릅니다. ○ 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 표지판, 노면표시) 신설, 이전 시 매뉴얼 규정 철거 준수하고, * 사업 착공 전 별도서식(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도면)을 첨부하여 필히 별도협의 요망하고, 설치완료 점검 및 인수인계 요망. ○ 교통시설 : - 향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이설, 철거사항 발생 시 세부도면 작성하여 1차 관할경찰서, 2차 교통정책과 협의 후 시설물 인수인계 전 기흥구 교통과와 협의할 것(교통시설물설치, 이설, 철거 시 도로교통법에 정한 규칙과 기준에 따라 시설물 설치)
② 추가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보)신호기 설치(진출시 시인성 확보필요) 검토요망 ○ 사업지 공사 중 주민안전, 교통사고예방 등의 교통안전대책 계획 수립 후 사업추진 바라며, 준공 전 교통 불편 민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등 증감이 필요한 경우 조치 요망.
③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공사부지 인근은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공사차량 진출입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파손을 유의할 것 (해당 공사로 인해 파손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노면표시, 미끄럼방지포장 등)은 원상복구 할 것)
④ 주정차혼란이 발생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지도 - 당해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한 차량을 도로에 주정차하여 교통 혼잡 민원 및 교통안전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주차 부지 확보 등 주정차 조치 계획을 세울 것 - 당해 공사 또는 작업으로 교통 혼잡 및 정체로 인한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안전요원 및 신호수 전면, 후면 배치

1 협의목적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 기준 협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분리기준 협의
- 광고물 설치에 대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설치기준 협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①
연면적이 1,000㎡가 넘을 경우		②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③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① 건설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등) 및 사업장폐기물(폐목재류 등)을 5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 착공 전까지 건설폐기물처리계획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하여야 함. 2. 지정폐기물(폐석면, 폐유 등) 발생시 폐기물의 처리 전에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을것 3. 공사구간 내 지상 또는 지하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함. 4. 유압식 변압기, 콘덴서 등 PCBs를 함유한 절연유를 사용하는 전력장비를 설치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신고 하여야 함. 5. 사업장(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는 다음연도 3/31까지 전년도 폐기물 소각?매립량(공사 등의 완료로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연도 폐기물 소각?매립량)을 한국환경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6. 사업장(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는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를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 으로 작성·제출해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다음 연도 2월말 까지 제출) - 건설폐기물 배출자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 제출(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해당연도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p>「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공사로 인해 폐기물(임목포함)이 신고 및 확인 대상 이상 발생 할 것으로 예상 될 경우 착공 전까지 폐기물배출자(사업장, 건설, 지정) 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후 적정관리(관리대장, 인계서 작성 등 철저) 하여야 함. - 폐기물 배출완료 후 15일 이내에 폐기물배출실적보고를 하여야 함. - 공사구간 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자재 등을 방치하지 말고 발생즉시 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 보관, 처리하여 주변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무기성오니를 토사와 섞어 성토하는 경우 폐기물 신고를 득해야 함. -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의 청결을 유지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폐기물 배출장소는 청소차량 진입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새로 건축하는 경우 청소차량 진입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장소(분리수거대) 확보 요망.
②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을때	<p>「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제12조의3 및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 관련 별표3[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 보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고(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3[분리수거함 품목별 색상] 참고), 준공검사 전까지 재활용품 분리·

보관 용기를 설치하여야 함.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 관련 별표3에 따라 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할 것

③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광고물관리팀]

*추후 외벽에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 표시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5호에 맞게 설치하려는지 여부에 대해 협의 요함.

*향후, 옥외광고물 설치 시 사전에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10조에 의해 허가(신고)를 득할 것.

[광고물관리팀]

*향후, 옥외광고물 설치 시 사전에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10조에 의해 허가(신고)를 득할 것.

[광고물관리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에 따라, 건물의 간판 및 게시시설 표시를 위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함.

*대상: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1종근생,2종근생 및 위락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향후, 옥외광고물 설치 시 사전에 법 제3조 및 시행령 제4~10조에 의해 허가(신고)를 득할 것.

3 대표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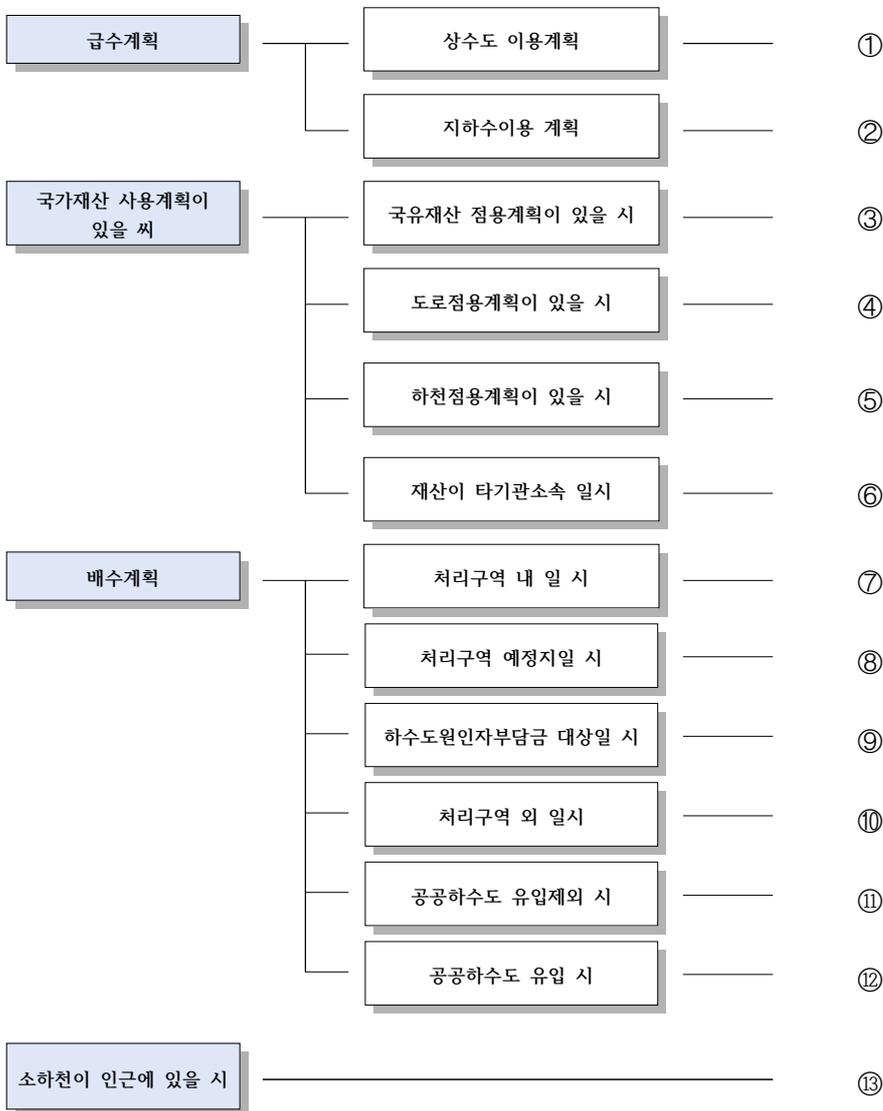
제12조의3(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①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협의목적

- 지하수개발 및 이용에 대한 「지하수법」 협의
- 국유지 사용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협의
- 하천 내 관로매설 등 시설물 설치에 대한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점용 협의
- 진출입로개설 및 관로매설을 위한 도로점용과 도로구역 내 행위제한에 대한 「도로법」 협의
- 처리구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결을 위한 배수시설 설치에 대한 「하수도법」 협의



변수	협의조건
① 지하수이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관리팀: 해당없음 ○ 건설방재팀 : 지하수법 / 조건부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위에 영향을 주는 굴착행위시 굴착행위 신고절차를 득하고 굴착행위를 할 것. <p>건설방재팀: 지하수법 / 조건부허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수 사용시 준공전 지하수 개발이용절차를 득하고 지하수 준공절차를 완료할것. 2. 지하수위에 영향을 주는 굴착행위시 굴착행위 신고절차를 득하고 굴착행위를 할것. 3. 추후 상수도 인입으로 인한 용도변경이나 이용종료시 신고절차를 득할 것. <p>[지하수법(건설방재팀, 조건가)]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할 경우, 지하수법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이행할 것. 단,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거나, 토출구경이 40밀리를 초과하는 양수시설이라면, 동법 제7조에 의거 지하수영향조사를 선행한 후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득할 것. 신고나 허가를 득한 후에는 동법 제9조에 따라 준공신고를 이행하여야 함.</p>
③ 국유재산 점용계획이 있을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재산팀 : 국공유재산법 / 조건부허가, 도로법 / 협의대상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공 전까지 국공유허가사용허가를 득할 것.(단, 국공유지 사용에 따른 타인의 토지 또는 인접소유자나 이해관계인(기존허가자 포함)이 있는 경우 사용승낙 또는 협의를 득하여 분쟁이 없도록 할 것)(국공유지 내 과도한 절성토 및 영구시설물 설치 금지) <p>① [국공유재산법] : 공유재산 사용허가(제 기흥2022-30호) 득한 사항으로, 기 허가조건 이행할 것.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허가 득할 것.</p>
④ 도로점용계획이 있을 시	<p>[도로재산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법 : 조건부허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착공 전까지 도로점용허가(진출입 및 관로매설 등)를 득한 후 도로점용공사 착공 신고 및 준공절차 이행할 것. 2.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및 도로점용구간이 정확히 표기된 관련 토목도면(구적도, 공사계획평면도, 최근 현장 원경 근경 사진 등) 첨부하여 사전협의할 것 3. 인접 도로점용허가자와 중복 구간이 있을 경우, 중복 허가자와 면적 조정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공동사용동의서 제출할 것. 4.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진출입 관련, 변속차로의 길이는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8조(변속차로)에 따라 최소길이 준수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법 : 착공 전 도로점용 허가 득할 것. [단, 진출입로 조성에 있어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에 대해 재협의 할 것.] <p>- 진출입로 관련 기 도로점용허가자로부터 동의서 첨부된 사항으로 저촉없음.</p> <p>[도로법(도로재산, 조건가)]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105호 준공 이후 진출입 및 관로매설에 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득할 것.</p> <p>[도로법] 도로점용허가(제 기흥2187호) 득한 사항으로, 기 허가조건 이행할 것. 변경사항 있을 시 도로점용(변경)허가 득할 것. [도로법(도로재산, 조건가)] 기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건으로 당초 허가내역(위치, 면적, 목적, 수허가자 등)상에 변경이 있을 시, 도로점용(변경)허가 및 권리의무승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p> <p>[도로법(도로재산팀, 조건가)] 착공 전, 관로매설에 관하여 도로점용허가 득할 것. 무단점유 사항(진출입로 옆 컨테이너) 착공 전까지 해소할 것.</p>
⑤ 하천점용계획이 있을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법 / 소하천정비법 : 관로매설 계획한 하천구역에 대하여 착공 전 하천점용허가를 득할 것 <p>- 소하천정비법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하천구역 내 행위(관로 매설 등)에 대하여 착공 전 「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득할 것. 2. 소하천점용 허가 신청 시 해당 위치의 소하천정비법과 저촉될 경우 허가 불가할 수 있음.

2. 교량에 대한 검토결과 여유고 및 교량의 길이 등에 대해 하천기본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른 설치 기준에 적합하며, 「하천법」제33조에 따라 설치 전 점용허가를 득해야함. 또한 본 교량의 소유권이 건축주에게 있을지라도 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없음.

1. 도로재산법(도로법, 국유재산법) : 신청지는 국도 45호선 도로구역과 접한 부지로 관로 매설 등 도로점용 허가 사항 발생 시 도로관리청인 수원국도관리사무소와 별도 협의 할 것.

(도로재산법, 협의대상 아님)

[국공유재산법/도로법] 진출입 및 관로매설에 관하여 한국도로공사와 별도 협의할 것.

2) [도로법(도로재산법)]

- 고속도로 도로구역을 이용한 진출입 계획으로 도로공사와 협의할 것.

[도로법,국공유재산법(도로재산법)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를 이용한계획으로 농업정책과 별도 협의할 것.

[도로법(도로재산법, 조건가)] 도시계획도로(소2-155호) 개설중인 구간으로 도로과와 별도 협의할 것. 도시계획도로 준공 이후 진출입 및 관로매설에 관하여 도로점용허가 득할 것

⑥ 재산이 타기관 소속 일시

⑦ 처리구역 내일 시

○ 하수관리팀

- 하수도법 : 조건부허가

1. 처리구역으로 오·우수 분리하여 공공하수도로 유입처리 가능하며, 『하수도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별도로 득할 것
2. 부지 내의 우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수는 공공구역 또는 공공우수관로로 방류되도록 조치하여야 함(구거 방류 시 농업정책과와 별도 협의할 것) 강우 등에 대비하여 부지 내에서 발생하는 우수로 인하여 인접 지역(사유재산) 및 공공시설(도로 및 배수로 등)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것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배수설비 시공요건을 갖춘자로 하여금 설치할 것
4.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맨홀공사 및 배수설비 설치지침」, 「하수도 설계기준(2022)」에 적합하게 시공할 것(PE관 사용 배제, 불명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맨홀접합을 원칙으로 하되, 관 접합의 경우 준공검사 시 CCTV 첨부할 것. 반드시 우수받이 설치, 45도 이하 연결관 사용)
5. 『하수도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타인의 토지 및 배수설비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승낙(점용허가, 토지사용승낙서 첨부 등)을 득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음
6. 기존 개인오수처리시설 사용 시, 반드시 환경위생과에 개인오수처리시설 폐쇄 신고 진행 후 우리 부서로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제출할 것

1) [하수도법(하천관리팀,허가가능)]

- 하수도법 제61조 규정에 따른 우수 증가량이10톤/일 미만으로 저축없음.(공공하수처리구역)

⑧ 처리구역 예정지 일시

1. 하수관리팀(하수도법)

- 처리구역 예정지역이나 인접지에 우수관로가 없어 정화조를 사용하는 사항으로 환경위생과와 별도 협의할 것
- 설치하는 하수도시설물은 환경부제정「하수도설계기준(2018)」 및 「하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할 것
- 부지 내의 우수가 공공우수관로로 연결되는 사항으로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별도로 득할 것
- 공사중 발생한 토사로 인해 주변 관로 배수 흐름에 지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 「하수도법」제29조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와 관련하여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 이용 시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분쟁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음

⑨ 하수도원인자부담금대상 일 때

[하수관리팀]

1. 처리구역으로 오·우수 분리하여 처리하고, 공공하수관로에 연결되는 사항으로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별도로 득할 것.
2. 부지 내의 우수로 인해 인접지 및 공공시설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
3.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할 것(우수받이 설치)
4.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배수설비 시공요건을 갖춘자로 하여금 설치할 것
5. 『하수도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 공사시 타인의 토지 및 배수설비를 이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6. 해당 건축물의 일일오수발생량이 10ton/일을 초과하여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대상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납부 할 것

<p>⑩ 처리구역 외 일 때</p>	<p>- 하수도법 : 협의대상아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처리구역 외 지역이며, 배수설비 설치 신고 대상이 아님. 2. 사유시설로서 허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임. <hr/> <p>- 하수도법 : 조건부허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발생오수를 공공오수관로로 유입은 불가함.(정화조 사용으로 환경위생과와 별도 협의할 것) 2. 부지 내의 우수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처리수는 공공수역 또는 공공오수관로로 방류되도록 조치하여야 함(구거 방류시 농업정책과와 별도 협의할 것) 강우 등에 대비하여 부지 내에서 발생하는 우수로 인하여 인접 지역(사유 재산) 및 공공시설(도로 및 배수로 등)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것 3. 공공오수관로에 연결되는 경우 『하수도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별도로 득할 것 4.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맨홀공사 및 배수설비 설치지침」, 「하수도 시설기준(2011)」에 적합하게 시공할 것(빗물받이에 접합을 금지함. 맨홀접합을 원칙으로 하되, 관 접합의 경우 준공검사 시 CCTV 첨부할 것) 5.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배수설비 시공요건을 갖춘자로 하여금 설치할 것 6. 『하수도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타인의 토지 및 배수설비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승낙(점용허가, 토지사용승낙서 첨부 등)을 득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음 <p>- 하천법등: 해당사항 없음.</p>
<p>⑪ 처리구역 외일 때</p>	<p>○ 하수관리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처리구역이나 공공하수도유입제외허가를 득한 건으로 발생 오수에 대해 환경위생과와 협의할 것 2. 배수설비 설치신고 대상이 아니며, 부지 내 발생 우수로 인해 <hr/> <p>- 하수도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지역은 처리구역 내 지역이나 정화조를 사용하는 사항으로 공공하수도유입제외허가 관련 하수시설과 협의할 것 2. 배수설비 설치신고 대상이 아니며, 정화조 사용에 대해 환경위생과와 별도 협의할 것 3. 부지내 발생우수로 인해 인접지 및 공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것 4. 『하수도법』제29조 규정에 의거 타인의 토지 및 배수설비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승낙(점용허가, 토지사용승낙서 첨부 등)을 득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쟁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음. <p>- 하천법 등: 해당사항 없음.</p>
<p>⑫ 공공하수시설 유입 시</p>	<p>[하수도법(하천관리팀,조건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지역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나 유입가능허가 득한 사항으로, 생활하수(오수)에 대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하여야하며, 착공전 BTL운영사 [용인맑은물㈜(031-693-8540)]와 사전협의 후 배수설비 연결 할 것.
<p>⑬ 소하천이 인근에 있을 시</p>	<p>○ 하천관리팀</p> <p>- 소하천구역(용대천) 및 시설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시공할 것</p> <hr/> <p>[하천관리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구역 내 행위 시 관련법에 따라 착공 전 점용허가를 받을 것. 2. 하천구역에 저촉되는 공사는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하며, 당해 행위로 인해 인근지대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할 것. 3. 하천구역에 저촉되는 공사(교량 등)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하천설계기준 및 하천법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시설기준에 적합 할 것. 4. 당해 행위로 인해 인근 주민의 통행과 영농에 지장이 없어야 할 것. 5.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 동의서를 제출 할 것. <hr/> <p>○ 하천관리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하천과-20563(2022.11.24.)호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평천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하천구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할것 - 하천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설물 파손시 우리 부서에 즉시 알리고 원인자 부담으로 보수를 진행하여야 함. 또한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우리부서와 협의 할 것.

- └ 자치행정과
- └ 민원지적과
- └ 사회복지과
- └ 산업과
- └ 환경위생과
- └ 교통과
- └ 도시미관과
- └ 건설과
- └ 도로과

1 협의목적

- 시행예정인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건축계획 저촉여부 협의

신청지가 도시계획도로와 접할 시	①
진출입로 공사가 수반될 시	②
가로등 보안등을 이설 할 경우	③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① 신청지와 도시계획도로가 접한 경우	○ 도로시설팀: 금회 신청지와 접하여 우리부서에서 추진 중인 용인도시계획도로(포곡) 소3-47호 노선의 도로개설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향후 용인도시계획도로(포곡) 소3-47호 도로개설 사업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도면 반영하여 사업추진할 것. 아울러, 용인도시계획도로(포곡) 소3-47호 도로개설 시 접속부 진출입 저촉이 없도록 공사계획 반영하여 사업추진하시기 바라며, 도시계획시설 편입 부지 내 옹벽등 타구조물은 불허. 변경사항 발생 시 우리부서와 별도 협의할 것
	○ 도로시설팀: 금번 공사계획 상 우리부서에서 추진 중인 용인도시계획도로(포곡) 소2-43호 노선의 도로개설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향후 용인도시계획도로(포곡) 소2-43호 도로개설 시 접속부 진출입 저촉이 없도록 공사계획 반영하여 사업추진하시기 바라며, 도시계획시설 편입 부지 내 옹벽등 타구조물은 불허. 향후 공사계획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부서와 별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아울러, 용인도시계획도로(포곡) 소2-43호 노선 금번 실시계획인가 신청 상 변경결정(법면부 포함)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 발생예정으로, 우리구에서 실시계획 인가신청한 공사내역 반영할 것..
	○ 도로시설1팀 - 해당 진출입도로는 도시계획도로(소로2-113호)로 실시계획증으로 도로점용허가 시 우리부서와 도로선형, 도로계획고, 배수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것.
	○ 도로시설팀 금회 신청지와 접하여 우리부서에서 추진 중인 용인도시계획도로(포곡) 소2-108호 노선의 도로개설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용인도시계획도로(포곡) 소2-108 도로개설 시 접속부 진출입 저촉이 없도록 공사계획 반영하여 사업추진하시기 바라며, 도시계획시설 편입 부지 내 옹벽등 타구조물은 불허. 향후 공사계획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부서와 별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 도로시설팀 - 12m이하 도시계획도로 개설(농어촌도로포함) : 해당지역은 우리시 도시계획도로(소2-113)가 계획되어 있는 지역으로 향후 도로개설시 저촉(진입로 등)이 안되도록 협의하고, 변경사항 발생시 우리구와 별도 협의할 것.
○ 도로시설팀 - 12미터 이하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 개설계획 : 현재 인접한 도시계획도로(양지) 소2-12호 도로개설을 위하여 설계(설계도면 미확정, 실시계획인가 신청 전) 진행 중이며, 필요시 도시계획도로 선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 착공 이후 변경허가 발생시 우리부서와 도로선형, 도로계획고, 배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팀

- 12m이하 도시계획도로 개설(농어촌도로포함) : 해당지역은 장기미집행 농어촌도로 지구선(리도207호) 개설공사가 계획되어 있는 지역으로 향후 도로 개설시 저촉이 되지 않도록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사항 발생시 우리부서와 별도 협의 할 것.

도로시설팀 : 우리 부서에서 추진 중인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179호 및 소2-155호 개설공사」 구간에 저촉되므로, 도로개설계획(종횡단고, 우수수처리계획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반드시 착공 전 협의할 것.

- 1) 도로시설팀 :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157호에 저촉되지 않도록 건축할것, 공사계획의 변경 등으로 도시계획선 내부의 침범이 예상될 경우 우리부서와 별도 협의 할것. 단지 내 도로 등 도로사용 관련 사유지로 건축법 등에 의거 적의 판단할 것.

②

진출입로 개설 시

○ 도로관리팀

- 관로 매설을 위해 인도 또는 도로굴착후 재포장시, 침하 및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할 것.
- 도로포장시, 포장 품질 확보를 위해 동절기 공사를 피할 것.
- 공사차량 통행으로 주변도로(법정 및 사유지현황 도로 등)가 파손되지 않도록 대책수립 및 관리하고 공사중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없도록 현장 주변정리 및 안전관리 철저하할 것.
- 도로시설물 설치시「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지침에 적합하게 계획설계하여 공사하기 바람.

○ 도로관리팀

- 공사차량 통행으로 주변도로(법정 및 사유지현황 도로 등)가 파손되지 않도록 대책수립 및 관리하고 공사중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없도록 현장 주변정리 및 안전관리 철저히 할 것.

도로관리팀

- 진출입로 관련「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용인시 횡단보도 부분턱낮춤 지침」에 적합하도록 계획? 시공하시기 바람.
- 진출입로 관련「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적합하도록 턱낮춤, 점자블럭 등을 계획? 시공하시기 바람.
- 도로,교통시설물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계획, 설치하시기 바람.
- 보도설치 시 보도블럭 디자인(색상) 및 재질은 도시계획단 공공디자인팀과 협의하시기 바람.
- 차선, 횡단보도 등 노면표시시 ks규격(ksm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사용을 권장하며, 우천시에도 시인성이 좋은제품을 적용할 것.
- 진출입에 따른 도로시설물(웬스 등) 철거 시 우리부서로 반납하시기 바람.
- 굴착 시 도로 전폭 재포장 할 것.

③

가로등, 보안등을 이설할 경우

○ 도로구조물팀(문희은) : 조건가

- 가로등, 보안등 이설 시 우리부서와 협의할 것.
- 아래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우리 부서와 별도 사전 협의할 것.
 - 해당 사업 중 발파 등 중차량 통행 등으로 인근 기존 도로구조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 사업대상지 및 인근의 기존 도로구조물(교량,터널 등)에 시설물 설치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있는 경우
 - 도로구조물(디자인펜스, 가드레일 등) 설치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있는 경우

<가로등 조명설비 이설 시>

- 이설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할 것.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의거 적법하게 이설할 것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적법하게 설치할 것
- 이설 공사 전, 중, 후 사진 제출할 것
- 가로등 이설 완료 시까지 임시조명을 충분히 설치하여 야간 조도 확보 할 것.
- 기타 민원발생 및 추가 작업사항 발생 시 우리구 의견을 반영할 것.

차량등록사업소

1 협의목적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협의

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일 경우

①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①

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
인 경우

- 사업개시전 자동차관리법 및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적합한 시설. 인력확보 후 별도로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등록 신청 할 것.

1

협의목적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폐수배출기준 등 환경기준 협의 및 수변구역내 건축주자격기준 협의
- 수변구역 내 용도제한에 대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협의
-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지역 내 오염총량 할당 협의
- 공장설립승인지역 내 제조업소 신축에 따른 「수도법」 협의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기준 협의
- 「자연환경보전법」에 생태계 보존지역 협의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여부 및 기준 협의



변수	협의조건
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정책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고시 제2019-105호 제13조(광물채굴 및 채석) 특별대책지역에는 「광업법」 제3조에 따른 광물채굴 또는 「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석재의 굴취·채취를 허용하지 아니함. 단, 산지관리법 제25조의2제1호 가목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석재채취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 ○ 환경정책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하신 사업계획서는 저촉없으나, 사업부지는 팔당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환경부고시 제2022-86호 제6조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에는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인 폐수배출시설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는 제한됨.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저촉없음. ○ 환경정책기본법 : 사업부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특별대책지역으로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설정한 환경기준(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을 공사운영 시 준수하여야 함. ○ 환경정책기본법 : 건축신청(수리점)사항은 저촉없으나, 사업부지는 팔당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공사 및 사업장 운영 시 오염원(토사 등)이 인근하천 및 우수로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② 공장설립승인지역 내 제조업소·공장 신축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장의설립 승인 등 인허가(신고,등록 등 포함)전에 미리 관주시장과 협의하여야 함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따른 공장(제조장 등 제조시설 포함)인 경우 입지 불가함(단, 폐수 무방류배출시설, 전량 위탁처리시설은 제외) 3. 상기 2항에 부합하고 다음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능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하수처리구역에 설립되는 공장으로 발생하는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공장일 경우 가능함 ② 오수발생량이 1일 10㎥미만일 경우 가능함 ③ 오수발생량이 1일 10㎥이상일 경우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3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는 공장일 경우 가능함 4.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대로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공장을 설립한 자의 준수사항인 오염사고 대비 우수·폐수 외부유출 차단시설 및 집수시설 설치하는 조건으로 가함. ○ 수도법(공장설립제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장의설립 승인 등 인허가(신고,등록 등 포함)전에 미리 평택시장과 협의하여야 함. 2. 수도법에 따라 2010년 11월 26일 당시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기존 산업단지 밖에 있는 공장으로 한정한다)이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11월 26일 당시 해당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 -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장의 업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으로 변경하는 행위 - 수도법 시행령 개정(2010.11.26)이전에 설치된 공장은 이후 등록취소에도 불구하고 기존공장으로 인정함(최초 공장설립 이후 기타 용도로의 변경 없이 계속 공장용도인 조건에 한함) 3. 이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및 제3조의 규정은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수도법 시행령 개정(2010.11.26)이전에 이미 설립된 기존공장에 적용되지 않음. 4. 상기 2항에 부합하고 다음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능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하수처리구역에 설립되는 공장으로 발생하는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공장일 경우 가능함 ② 오수발생량이 1일 10㎥미만일 경우 가능함 ③ 오수발생량이 1일 10㎥이상일 경우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3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는 공장일 경우 가능함
③ 수변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4. 환경정책기본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건축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위한 농지전용 등의 사전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부터 6개월 이전부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I 권역에 주민등록 및 실 거주하여야 하고(단, &lsquo;90. 7.19 이전부터 원필지 또는 별개의 필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 예외) 나. 다음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800㎡미만일 경우 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 연접되어 있으며 ①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명의신탁자 포함). ②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혼인한 비속은 제외) 또는 미혼의 형제자매인 경우로서 동일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③토지가 인접(해당 건축물의 필지 경계로부터 반경 50m이내)되어 있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은 동일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p>※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환경부 고시 제2022-86호 규정에 따라 불가함.(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 처리하는 건축물은 제외)</p>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
 - 신청하신 사항(사무소, 수련시설)은 저촉없으나, 사업부지는 경안천 경계로부터 1Km이내인 수변구역으로 야영시설 설치·운영시 발생하는 오염원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신청하신 사항(사무소)은 저촉없으나, 사업부지는 수변구역으로 식품접객업, 숙박시설, 목욕장업,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종교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공장 및 제조업(농산물 가공업 등 일부제외), 폐수(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입지 및 용도로 변경은 불가하며, 시설(사무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할 경우 BOD, SS를 10mg/ℓ 이하로 처리하여야 함.

④ 오염총량 대상

- 오염총량
 - 환경정책기본법(수변구역 등)에 저촉(불가)되지 않을 경우,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특대(1권역)지역으로 해당필지에 건축연면적(기존 건축물 포함) 합계가 800㎡(식품접객업, 숙박업 400㎡)미만으로 저촉없으나(발생오수를 공공처리장에 유입시 연접, 인접 미적용 : 연면적에 미합산),
 - ▶ 단, 발생오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을 경우 아래사항(1,2,3)을 포함하여 건축의 연면적을 합산하여야 하며, 건축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800㎡(식품접객업, 숙박업 400㎡)이상이면(수변구역일 경우는 입지불가로 할당할 수 없음) 지역개발사업 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하는 대상사업으로 오염총량산정서(친환경적 개발계획을 수립)를 첨부하여 할당 협의를 하실것.(단, 유역총량관리 상황에 따라 협의가 제한될 수 있음)
 1. 토지가 연접되어 있으며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명의신탁자를 포함)
 2. 토지가 연접되어 있으며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혼인한 비속은 제외) 또는 미혼의 형제 자매인 경우로서 동일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인의 임원은 본인만 확인
 3. 토지가 인접(해당 건축물의 필지 경계로부터 반경 50m 이내의 필지)되어 있고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은 동일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 할당대상일 경우:총량산정서 작성전 사전 협의(2단계 계수 변동 등)후 작성 요망

- 오염총량(오염총량팀) : 동일지번이 포함된 부지에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 포함된 건축물은 저촉없음 (단, 동일지번이 포함된 부지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포함된 건축물일 경우, 산정서를 첨부하여 인.허가 전 오염총량 할당 협의를 완료하실것)-유역총량관리 상황에 따라 협의가 제한될 수 있음

- 오염총량
 - 발생 오수는 검토서에서 제시한 대로 개인하수처리시설(2㎡/일*13개소, 방류수수질기준(BOD: 20mg/L, T-P: 2mg/L))에 유입하여 적정 처리해야 하며,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제27조에 따른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협의 및 추가 할당여부를 검토 받아야 합니다.
 - 아울러, 개별 법령에 따라 불허가·허가취소 또는 자진취소(취하)하는 경우 할당부하량이 자동 회수됨을 알려드립니다.

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조건가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화산리 어린이유치원 증설사업(화산성민유치원)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을 준수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 : 조건가
 저촉없음.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또는 같은법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할 경우 재협의해야 함.

환경영향평가법:보완서류(반경50M개발현황도)에 제시한대로 사업의 승인 등 면적(연접,인접 포함)이 보전관리지역내 5,000㎡ 미만인 경우 저촉없음.

- 환경영향평가법:'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서(변경률)'에 제시한대로 토지이용계획 변경률이 30% 미만인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을 준수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환경행정팀 임남수):조건가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환경보전방안검토서 포함) 및 협의의견을 준수해야 함.

환경영향평가법(환경행정팀 임남수):조건가
 확인서(환경영향평가법)에 제시한대로 사업의 승인 등 면적(연접, 인접 포함)이 계획관리지역내 10,000㎡ 미만인 경우 저촉없음.

환경영향평가법(환경행정팀 임남수):조건가저촉없음. 단, 다음에 해당될 경우 사업의 승인 등 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한 경우 그 협의의견을 첨부하여 재협의하여야 함.

- 사업자가 10년 이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으로 승인등을 받은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등을 받은 면적과 추가(누적)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하 최소 대상)면적(계획관리지역:10,000㎡) 이상이고,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대상 면적의 30% 이상인 경우 내지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해당 사업자가 그 승인등을 받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승인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등을 신청한 면적과 추가로 승인등을 신청한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면적 이상인 경우 가. 사업자와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 나. 사업자가 승인등을 받은 필지와 동일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다. 필지가 분할 된 후 3년 이내에 분할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오염총량(오염총량팀 권한):저촉없음)

환경영향평가법(환경행정팀 임남수):조건가

용인서천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환경보전방안검토서 포함) 및 협의의견을 준수해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

- 보완서류(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검토)에 제시한대로 토지이용계획 변경률이 30% 미만인 경우 '용인 죽전7호 근린공원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포함) 및 협의의견을 준수하여야 함.

⑥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 물환경보전법 : 조건부 허가

- 폐수배출시설 없는 조건으로 가하며 향후 환경관계법에서 정한 배출시설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 설치 전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이경우 타 법률에 의해 입지 제한될 수 있음(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될 경우 입지가 불가할 수 있음)

-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부담을 위하여 사업장별 오·폐수 배출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단, 오수유량계는 현장여건 또는 입주기업의 요청 등으로 유량계 부착이 어려울 시 유량계 부착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이럴 경우 상수도 유량의 90%적용하여 사용량 산정.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는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

「물환경보전법」상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기업체는 오·폐수를 별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처리)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야 합니다.(특정수질유해물질은 공공폐수처리장 유입불가)

- 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는 원인자(산업단지 내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전 또는 입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필요 또는 협조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 오·폐수 유입(변경)승인 신청할 것.
- 건축공사에 따른 우·오수, 폐수 등의 배수설비시 정확히 구분하여 설치하고 건축물 준공 전 우리부서에 사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관로 오점으로 인하여 공공폐수처리장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인자가 모든 사항을 책임져야 함.

○ 물환경보전법 : 조건가

- 기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업체로서 변경대상인 경우 우리부서와 재협의 또는 경기도청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 변경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이경우 타 법률에 의해 입지 제한될 수 있음(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발생할 경우 입지불가)

⑦ 산업단지 내

「수도법」 및 「물환경보전법」: 조건부 허가 -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대로 폐수배출시설 없는 조건으로 가하며, 향후 제조시설 변경 등 폐수가 일일최대 0.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오니 우리부서와 재협의 할 것.

-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부담을 위하여 사업장별 오·폐수 배출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단, 오수유량계는 현장여건 또는 입주기업의 요청 등으로 유량계 부착이 어려울 시 유량계 부착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이럴 경우 상수도 유량의 90%적용하여 사용량 산정)

「물환경보전법」상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기업체는 오·폐수를 별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처리)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야 합니다.(특정수질유해물질은 공공폐수처리장 유입불가)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는 원인자(산업단지 내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전 또는 입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주체가 운영 등에 필요 또는 협조사항을 적극 이행하여 합니다
-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주체에게 오폐수 유입승인 신청할 것.

- 건축공사에 따른 우·오수, 폐수 등의 배수설비시 정확히 구분하여 설치하고 건축물 준공 전 우리부서에 사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공공폐수 처리시설 인수전에는 산업단지 시공사 확인서 첨부, 확인서 미 제출시 준공이 불가능 합니다.)

* 관로 오점으로 인하여 공공폐수처리장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인자가 모든 사항을 책임져야 함

환경영향평가법(환경행정팀 임남수):조건가용인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환경보전방안검토서 포함) 및 협의의견을 준수해야 함.오염총량(오염총량팀 권한):저촉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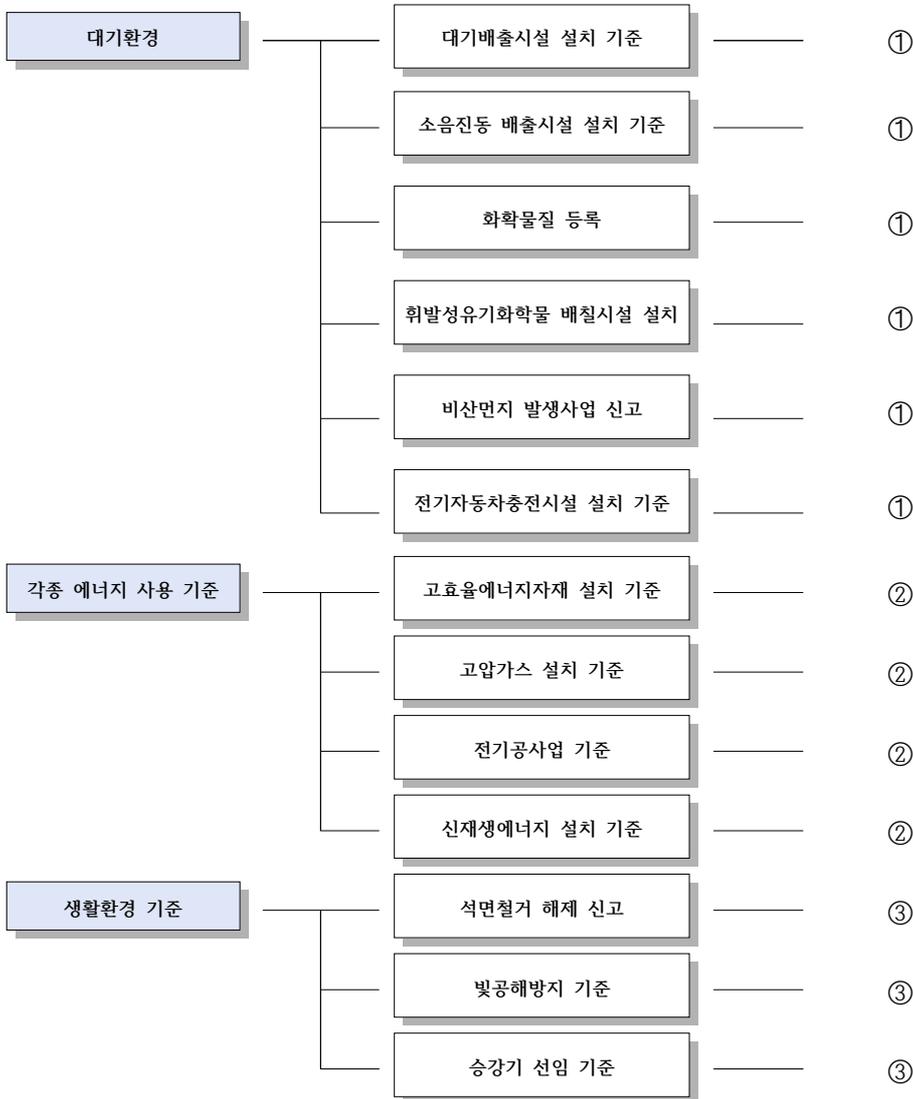
⑧ 비오톱 1등급 지역

2. 자연환경보전법 :신청부지 중 268-7번지 서측 일부지역이 용인시 도시생태현황지도(2021.12); 최종 비오톱 평가 결과 인간 간섭이 없거나 장기간 안정되고 성숙한 식생 비오톱과 자연성이 높아 절대적인 보존이 필요한 비오톱인 1등급 지역으로 보전을 권고함.

기후대기과

1 협의목적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대상 및 설치기준 협의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차 설치기준 협의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기준 협의
- 기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빛공해방지법」, 「승강기안전관리법」 기준협의



변수	협의조건
<p>① 대기환경</p>	<p>○ 대기환경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조 관련 [별표3]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전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아야 함. * 특히,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도 시간당 증발량이 2톤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Kcal이상인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의 시설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됨. 2. 제조시설 중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1]의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전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아야 함. 3.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시 한강유역환경청에 화학물질관리법 또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에 따라 등록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4. 공사 시 자동차 공회전과 관련하여 인근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차량 공회전 제한에 대한 지도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5.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1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취급 할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와 함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명세서와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설 설치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6. 착공 전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의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별표 14]'에 적합하게 조치하여야 함.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및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해당 될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을경우, 해당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권고 함. <p>(대기환경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조물의 용적합계나 공사면적 또는 연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의 경우 착공 전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여야 함,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게 조치하여야 하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2. 자동차 공회전 관련하여 인근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차량 공회전 제한에 대한 지도 및 홍보에 철저하여야 함.
<p>② 각종 에너지 사용기준</p>	<p>[에너지관리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을 장려함.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에 해당할 경우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충족시켜 등록·신고·허가를 득하여야 함.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될 경우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먼저 득할 것.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및 제8조에 해당할 경우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충족시켜 신고·허가를 득하여야 함. 5.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 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전기공사 표지를 게시하여야 함. 6.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법령에서 규정된 시기별로)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시설에 적용하는 방안을 권고함. 8. 「위험물 안전관리법」 관련은 용인소방서와 도시가스 공급 관련은 ㈜삼천리와 별도협의 바람.
<p>③ 생활환경 기준</p>	<p>[생활환경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 시 정온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차량 저속운행 및 야간 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 정온시설은 인근 도로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교통소음 침투를 최소화하도록 차음설계, 방음시설 등 소음저감시설을 반영하여 교통소음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2.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업자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 발주자는 석면건축자재 중 분무재나 내화피복재가 있거나 그의 석면건축자재 사용면적 합이 500㎡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 시 석면비산정도 측정 및 결과 제출해야하며, 제30조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건축자재 중 분무재나 내화피복재가 있거나 석면건축자재면적이 800㎡이상 사용된 사업장의 석면해체·제거작업개시 7일전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을 지정하고 신고(구청)를 득해야 함 3.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19.7.19 시행)에 따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옥외광고물 허가 대상 광고물·장식조명 등) 설치 시 제11조에 의거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함 4. 승강기 설치 시 승강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의거 관리주체는 승강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에 선임통보서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관리교육을 받게해야 함 5. 승강기 설치 시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거 관리주체는 승강기 설치검사 받은 날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제31조에 의거 승강기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고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함

자원순환과

1 협의목적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 기준 협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분리기준 협의

용도가 공동주택인 경우	_____	①
상당량 폐기물 배출할 경우	_____	②
음식물류 다량 배출 사업장	_____	③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① 용도가 공동주택 및 다세대주택인 경우	<p>[도시청결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 및 제11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분리보관 및 배출을 위하여 지상에 청소차량의 진출입(5톤이상 청소차량 차고 및 작업 높이, 차량 회전반경 등 고려) 및 수거가 용이한 장소를 확보할 것(청소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높이 5m 이상을 확보할 것) 공동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경우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용검사 전 가연성폐기물 및 불연성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하여 50가구당 1개조(2종 이상, 종별 1,100리터 이상)의 보관용기를 설치할 것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청결을 유지 할 것 <p>[음식물자원화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배출하고 수집운반(5톤 차량)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수거용기(120ℓ)를 비치할 것(사용승인 신청시 음식물 수거통 비치 장소 도면 표기 및 사진 첨부할 것)
② 상당량 폐기물 배출할 경우	<p>[재활용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3(폐기물배출자의분리보관등)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질·상태별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공동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경우 폐기물의 효율적인 분리보관 및 배출을 위하여 청소차량의 진입이 용이한 장소(청소차량 차고 및 작업 높이, 차량 회전반경 등 고려)에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용기는 품목별 색상을 적용하여 50가구당 1개조(7종 이상, 종별 120리터 이상)를 설치하고, 사용검사 전 설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 공동주택의 경우 수납공간이나 불박이식의 집기 또는 비품 등을 불박이장으로 설치 할 것을 권장함. <p>[폐기물관리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관할구청 도시미관과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아야 함. 건설공사,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5톤이상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임목폐기물 포함) 폐기물의 배출 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까지 관할구청 도시미관과에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함. 공사구간내 지상 또는 지하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보관?처리하여 주변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유압식변압기등 PCBs함유기기를 사용하는 전력장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도시청결과에 관리대상기기 신고를 하여야 함.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관할구청 도시미관과에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을 보고하고,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p>&current: 실적보고 시기</p>

-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해당연도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
-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제출

(폐기물관리)

1.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양이 1일 300kg 이상 이거나, 배출시설 (대기,수질,소음·진동) 설치 사업장에서 1일 100kg 이상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관할구청 생활민원과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규정에 따른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신고 기한까지 변경신고를 득할 것.
7.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3조에 해당시[허용보관량증가 및 시설변경(선별시설포함)등]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득할 것.

폐기물관리법 제25조11항에 따른 변경사항에 해당할 경우 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를 득할 것

(재활용팀)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3(폐기물배출자의분리보관등)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질상태별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용기를 품목별 색상을 적용하여 청소차량의 진입이 용이한 장소(청소차량의 차고(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 확보) 및 작업 높이, 차량 회전반경 등 고려)에 설치하고 깨끗하게 운영하여야 함.

(음식물자원화팀) : 조건부 허가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에 해당할 경우 관할 구청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영업개시일부터 1개월이내 신고할것.(다량배출자 : 식품위생법에 의한 100인이상 집단급식소(단, 유아교육법에 의한 급식소는 200인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 일반(휴게)음식점,(단, 주로차, 커피, 빵, 아이스크림류, 떡, 과자를 제조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은 500제곱미터 이상)
2.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배출하고 수집·운반(5톤 차량)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수거용기(120ℓ)를 이용하여 배출 및 수거할 수 있는 공동보관(사업부지내) 장소 지정할 것. 다만, 지하에 보관장소를 설치할 경우 수거차량의 작업이 용이하도록 천장고(유효높이)가 4m이상 필요함

(음식물자원화팀) : 조건부 허가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에 해당할 경우 관할 구청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영업개시일부터 1개월이내 신고할것.(다량배출자 : 식품위생법에 의한 100인이상 집단급식소(단, 유아교육법에 의한 급식소는 200인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 일반(휴게)음식점,(단, 주로차, 커피, 빵, 아이스크림류, 떡, 과자를 제조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은 500제곱미터 이상)
2.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배출하고 수집·운반(5톤 차량)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수거용기(120ℓ)를 이용하여 배출 및 수거할 수 있는 공동보관(사업부지내) 장소 지정할 것. 다만, 지하에 보관장소를 설치할 경우 수거차량의 작업이 용이하도록 천장고(유효높이)가 4m이상 필요함

③

음식물류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일 경우

1 협의목적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저촉여부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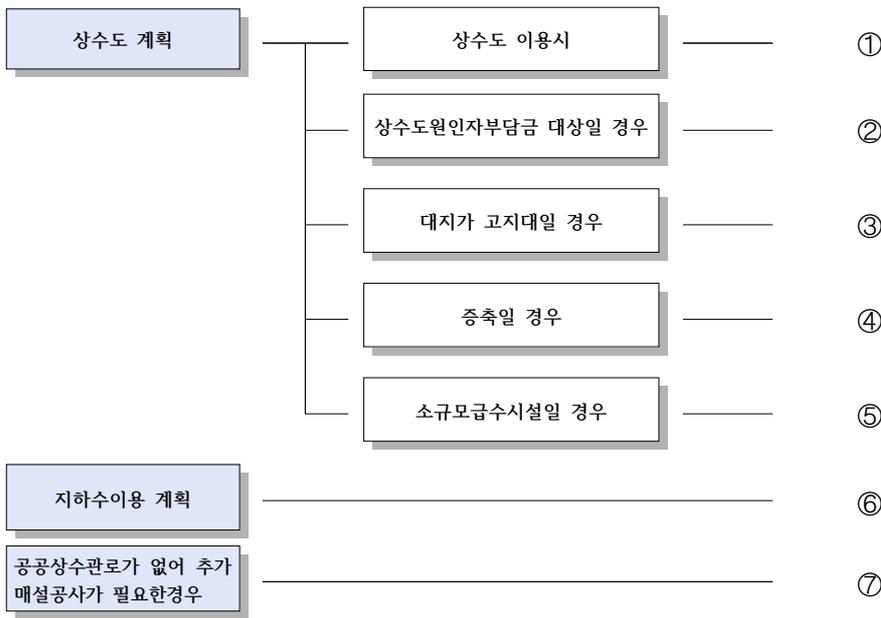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이 근린공원	_____	①
공원부지 내 시설 설치 시	_____	②
인근에 도시공원 부지가 있을 경우	_____	③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① 토지이용계획이 근린공원인 경우	<p>신청부지는 용인도시계획시설(유원지/기흥호수공원)에 편입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지임</p> <hr/> <p>- 현 우리시는 (주)씨티건설과 공동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죽전70호 근린공원)에 대하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 이에, 「민간공원추진자」가 기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등에 따라 공원부지 내 공원 시설(커뮤니티센터)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별도 저촉사항 없음을 알려드립니다.</p>
② 공원부지내 시설 설치 시	<p>- 수지구 동천동 산85-9번지에 단독주택 1개동 건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도 의견 없으나, - 대상지와 연결한 도시공원부지가 타 시설로 인하여 중폭 또는 침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우·배수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대책 철저히 할 것.</p> <hr/> <p>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고시(용고 제2020-95호)에 따라 조성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 발생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 이행할 것. 끝</p> <hr/> <p>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고시(용고 제2020-95호)에 따라 조성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 발생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 이행할 것. 끝</p>
③ 인근에 도시공원 부지가 있을 경우	<p>사업 대상지는 우리 부서에서 추진 중인 영덕1근린공원(하갈동 298-1번지) 조성사업과 연결한 토지로 공사 추진 시 충분한 이격 거리 확보 등 공원 훼손 방지 대책과 함께 건축물 축조 후 사업 대상지와 공원 경계부에서 발생 예상되는 각종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는 우리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끝</p> <hr/> <p>사업 대상지는 우리 부서에서 추진 중인 영덕1근린공원(하갈동 298-1번지) 조성사업과 연결한 토지로 공사 추진 시 충분한 이격 거리 확보 등 공원 훼손 방지 대책과 함께 건축물 축조 후 사업 대상지와 공원 경계부에서 발생 예상되는 각종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는 우리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p>

1 협의목적

-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설치, 급수공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 협의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① 상수도이용	1) 『수도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의거 절수설비를 설치(절수등급 표시)하고 절수설비설치확인서(확인서,인증서,사진)를 새움터에 등록하여야 함. 2) 『용인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2에 의거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대지경계선의 3미터 이내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의 대지 내 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 계량기 이후 내부배관은 심도 1.2m 상에 매설, 기타관로 이격거리 30cm유지, 상수관로 상부에서 지면까지 기타지장물이 없도록 시공할 것 3) 상수관로 급수공사 시행 후 건축물 준공시 계량기 위치 전경사진 제출 할 것.(계량기 검침이 용이하지 않을 시 이설 조치할 것, 향후 건축 변경 등에 따라 수도계량기 검침이 용이하지 않을 시 우리시 요구에 따라 이설 조치하여야 함) 4) 급수공사의 분기위치 및 관경은 지역실정을 고려(가압장 및 감압변 설치 등)하여 여건에 맞게 우리시에서 결정하며, 『용인시 수도급수조례』제12조 제1항에 의거 소요공사비 전액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함. 5) 상수도 인입에 따른 급수공사는 건축물 착공 후 신청하되 『용인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의거 급수관 매설과 관련한 인?허가 사항 및 타인소유 토지(건물)의 토지(건물)사용승낙서 등은 급수공사 신청시 제출하여야 함.(토지 사용 승락서 미제출시 급수공사 불가함.) 6) 우리시 상수관로와 연결되는 일체의 수도시설(배수관로, 급수관로 등)은 우리시와 원인자부담공사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없이 설치한 수도시설을 이용한 급수공급은 불가함
②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대상일 경우	0) 기존 수도시설의 용량 및 관경, 인근 수용가의 최대급수량을 고려한 수리검토를 실시하고, 수도시설 추가설치 등을 포함한 급수계획을 첨부하여 별도 협의할 것 1) 절수설비를 설치(절수등급 표시)하고 절수설비설치확인서(확인서,인증서,사진)를 새움터에 등록하여야 함. 2)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대지경계선의 3미터 이내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의 대지 내 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 계량기 이후 내부배관은 심도 1.2m 상에 매설토록 함 3) 급수공사 시행 이 후 건축 변경 등에 따라 수도계량기 검침이 용이하지 않을 시 우리시 요구에 따라 이설 조치하여

	<p>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상수도 인입에 따른 급수공사는 건축물 착공 후 신청하되 첨부서류를 급수공사 신청시 제출 5) 우리시 상수관로와 연결되는 일체의 수도시설(배수관로, 급수관로 등, 특히 단지 도로 내 관로)은 우리시와 원인자부담공사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없이 설치한 수도시설을 이용한 급수공급은 불가함 6) 수도시설확장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으로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서 제출전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전(급수공사 신청전까지)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완납되어야 함.(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완납되어야 급수공사 신청이 가능함) 7) 원인자 부담금 납부협약은 수도시설과에서 별도 체결하고 착공신고서 제출시 부담금 납부협약서가 제출되지 않을시 우리과와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함 8) 건축허가시 연면적(세대수)보다 사용검사시 연면적(세대수)이 증가할 경우 원인자부담금 부과내역이 변동되므로 재협의 후 준공조치 하여야 함
<p>③ 대지가 고지대인 경우</p>	<p>○ 수도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부지는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부지 내 용수공급이 지남하므로 건축 착공 신고전까지 기존 수도시설의 용량 및 관경, 인근 수용가의 최대 급수사용량을 고려하여 수리검토(관망해석 등)를 실시하고 우리부서와 별도 서면 협의할 것. - 가압장 설치 시 「상수도설계기준」 및 우리 부서에서 제공하는 용인시 시설기준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위치 및 구조물, 펌프용량 등 주요사안을 우리부서(수도정보)와 별도 서면 협의할 것. - 가압장 가동 시 인근지역 수용가에 대하여 출수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출수불량 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책임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p>○ 본 지역은 다소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별도의 가압장치 및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원활한 급수공급이 가능함</p>
<p>④ 증축일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축으로 물사용량이 증가하여 기존 수도계량기 용량 부족시 증설급수공사 신청을 하여야 하며『용인시 수도급수조례』제12조 제1항에 의거 소요공사비 전액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함. ○ 『수도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의거 절수설비를 설치하고 절수설비설치확인서(확인서,인증서,사진)를 새움터에 등록하여야 함.
<p>⑤ 소규모급수시설일 경우</p>	<p>[수도관리]</p> <p>상기 위치는 가창2리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 지역으로 상수도 설치 시 해당마을 이장과 협의 후 설치할 것</p>
<p>⑥ 지하수이용계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수 이용계획으로 저축없음. 다만, 추후 지하수 고갈 및 오염 등으로 인한 수도물 공급 요청 시는 상수도 시설물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을 하여야 함 2) 용수의 종류(상수도, 지하수)에 상관없이 『수도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의거 절수설비를 설치하고 절수설비설치확인서(확인서,인증서,사진)를 새움터에 등록하여야 함.
<p>⑦ 공공상수관로가 없어 추가 매설공사가 필요한 경우</p>	<p>본 사업장에서 약60m떨어진지점에 공공상수관로가 확인되는바, 사업장까지 상수관로 매설하여야 급수공급이 가능함</p>

1 협의목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완료 후 사용전검사 대상 건축물

물이용시설 설치대상일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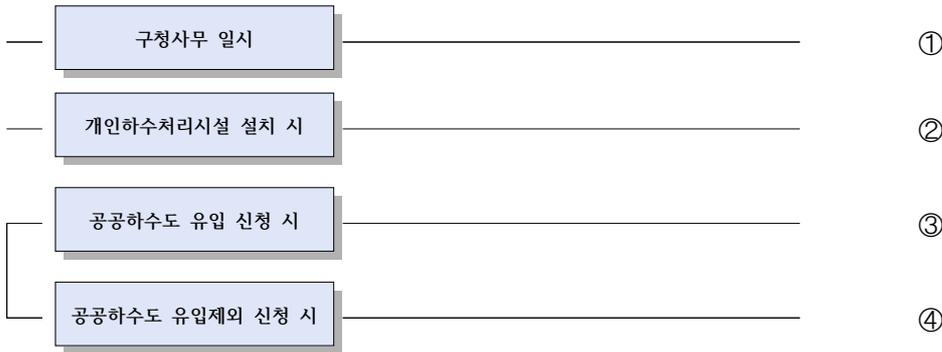
①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① 물재이용시설 해당여부	<p>1) 건축면적 667.78㎡ 및 연면적 3,070.66㎡의 공동주택(단지형다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건축면적 10,000㎡, 연면적 60,000㎡ 미만)로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협의대상이 아닙니다.</p> <p>2) 만일,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물 재이용시설(빗물, 중수도시설)을 법적 기준에 충족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7조, 제8조, 「물 재이용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건축물 설치허가(신고) 시 반드시 우리부서와 사전 (재)협의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 준공 전 설치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p> <p>※ 녹색건축인증 관련 사항은 관계 기관과 별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p>

1 협의목적

- 하수처리계획에 대한 「하수도법」 협의
- 용량 50제곱미터 이상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 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 협의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① 협의대상이 아닐 시	○ 하수계획팀 1. 구청으로 사무이관된 사항으로 의견없음.
②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시	▷ 하수계획팀 1. 해당지역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발생오수를 공공오수관로로 유입은 불가함.(오수발생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설치 신고할 것) 2. 부지 내의 우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수는 공공수역(또는 공공오수관로)으로 방류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하수계획팀 1. 「하수도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완료 하여야 하며, 반드시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전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매설전 사전검사)를 득한 후 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함. 2. 타법에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를 이행하시기 바람. 3. 지방세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면허세(동지역:18,000원,읍면:4,500원)를 납부하여야 함
③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시	[하수계획팀] 1. 해당지역은 하수처리구역으로 발생오수는 분류식 오수관로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토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공하수도 유입이 어려울 경우『하수도법』제2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를 득하여야 함. 2. 부지 내의 우수는 공공수역(또는 공공오수관로)으로 방류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3. 공공하수도에 발생오수를 유입하는 경우『하수도법』제61조 규정에 따라 준공 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함. ○ 하수정비팀 1. 사업시행자는 착공 전 우리부서에서 추진 중인 공사와의 저촉여부 및 일정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 (※ 협의요청 시 공사상세계획, 도면, 공정표 등 관련서류 첨부 요망) 2. 『하수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해당구청 건설(도로)과 (BTL구간은 하수운영과)와 협의,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3. 『하수도법』제29조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와 관련하여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 이용 시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분쟁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음. 4. 그 밖의 하수시설물 관련 사항은 하수운영과와 협의할 것. [오수관리팀] - 오수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저촉 사항 없음. 단, 미유입 시 재협의 할 것.

④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시

1. 해당지역은 하수처리구역으로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공공하수도에 유입 시켜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유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하수도법」제2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를 건축물 착공 전까지 득하여야 함.
2. 부지 내의 우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수는 공공수역(또는 공공우수관로)으로 방류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해당지역은 하수처리 내 지역이나,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라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대상이 아님.

1 협의목적

- 하수처리계획에 대한 「하수도법」 협의

- 사유지 내 배수시설 연결시 ①
- 공공하수도관 연결시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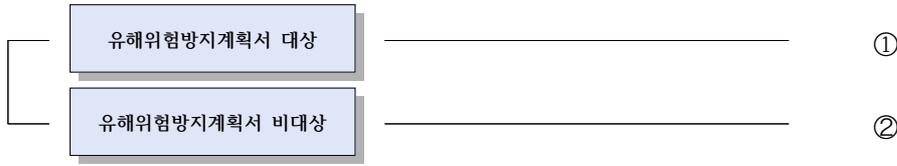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① 사유지 내 배수시설 연결시	○ 하수처리계획과 관련, 개인 사유지 내 배수시설에 연결 처리하는 계획으로 별도 의견 없음
② 공공하수도관 연결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하는 하수도시설물은 환경부제정 ‘하수도설계기준-관로신설설계기준’,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하수도관 부설 및 연결공사’ 및 우리시 ‘맨홀공사 및 배수설비지침’, 「하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함. ○ 하수관로 접합부 확인은 반드시 받아야 하고, 합류지점 하류구간의 통·수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부족 시 확관 등 추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함. ○ 해당 구간은 구청관리 운영구간으로 착공 전 반드시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굴착 전 하수관망도 참고 및 현지 확인, 공사 전 시험굴착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관로 위치를 파악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전·후 해당구청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사전, 사후협의 진행할 것) ○ 공공하수관로 파손, 이설 등의 상황발생 시 즉시 처인가청 건설과 및 하수운영과(차집관로)로 보고 및 별도 협의 후 처리할 것. ○ 공사 준공 시 성실 시공여부 확인을 위한 CCTV조사 및 송연조사 등을 실시하고, 관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우리부서와 처인가청 건설과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공공하수관로의 신설 사항이 있을 경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GIS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용인시 공간정보시스템과 호환 가능한 시설물 GIS DB를 구축, 반영하여야 함. ○ 하수관거에 이상 발생 시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 할 것.

- | | | |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용인경찰서 | 한국도로공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
| 광주시 수질정책과 | 한국전력공사 | 평택시 수도과 | 경기도 도로정책과 |
| 용인소방서 | 교육지원청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 국방시설본부 |
| 한국부동산원 | 평생교육건강과 | 경기도환경관리사무소 | 한국수자원공사 |
| 군부대 | 도로교육지원청 | 한국농어촌공사 | 한강유역환경청 |
| | 교육시설과 | | |
| | 교육지원청 | | |
| | 기획경영과 | | |

1 협의목적

- 용도가 제조시설일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협의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1.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업종(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2212, 22213) - 전기계약예정용량 300kW이상(9,800kW) 으로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기한 내 제출 요청 ※ 위 내용과 같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임을 알려드리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거하여 계획서 2부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출시기 : 작업시작(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제외) 15일전까지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사업소개 > 산업안전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확인제도 안내 > 참조
②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비대상	1.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및 같은 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의 대상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비대상 ○ 공정안전보고서(PSM) : 비대상 2. 상기 법령에 따른 대상 판단은 건축주가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대상여부 확인 의뢰서”의 내용으로 판단하였으며, 건축주의 사업 계획 변경, 기재내용 누락 등에 따라 대상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의 변경, 기재내용 누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체적으로 대상여부를 판단하시어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작업중지 등)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제출대상기준 확인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산업안전부 김예훈 대리(T. 031-259-727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사업소개 > 산업안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제출대상 사업장 ○ (공정안전보고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사업소개 > 전문기술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 사업안내 ○ 해당 사업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지 않아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계약용량이 300kw 미만이며 - 해당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 증설, 교체,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 합이 100kW 이상 증가되는 경우 - 향후 제출 대상이 되거나(대상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며 생산과 관련된 설비 일체를 설치. 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 용해로, 건조설비 등 대상 설비를 설치할 경우 -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 세부내용 안내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 안내 > 산업안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제출해주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확인 의뢰서'를 바탕으로 판단한 결과 제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향후 제출 대상이 될 경우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대상 요약 : 대상 13개 업종 및 규모(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에 해당하며 생산과 관련된 설비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5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 * 증설, 교체,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 합이 100kW 이상 증가될 경우
- 『제도 세부내용 안내』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 안내 > 산업안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해당 사업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 전기계약용량이 300kw 미만이며 5대 설비 설치 건이 아닙니다.
 - 해당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 * 증설, 교체,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 합이 100kW 이상 증가되는 경우
 - 향후 제출 대상이 되거나(대상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며 생산과 관련된 설비 일체를 설치, 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를 변경), 용해로, 건조설비 등 대상 설비를 설치할 경우
 -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제도 세부내용 안내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 안내 > 산업안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아닙니다.
 - 해당업종(금속제 창호 및 샷시, 322002)
 - 전기계약예정용량 300kW이상(4kW)으로 대상이 아님.
 - * 전기계약(예정)용량이 300kW이상으로 경우와 신너에 포함된 톨루엔이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에 포함되어 60m³/분 이상,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제거하기 위함 및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국소배기장치의 경우 배풍량이150m³/분 이상일 경우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사업소개 > 산업안전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제도 안내 > 참조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증축) 대상 아닙니다.
 - 해당업종(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09)
 - 전기계약용량 300kW이상(295kW)이며, 전기정격용량 증가 100kW이상(-kW)의 변경 없음
 - * 100kW이상의 정격용량 증가로 인해 전기계약용량이 300kW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 * 전기계약용량이 300kW이상인면서 증설로 인해 전기정격용량 100kW이상 증가되는 경우,
 - * 신너에 포함된 톨루엔은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에 포함되어 60m³/분 이상,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제거하기 위함 및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국소배기장치의 경우 배풍량이 150m³/분 이상일 경우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사업소개 > 산업안전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확인제도 안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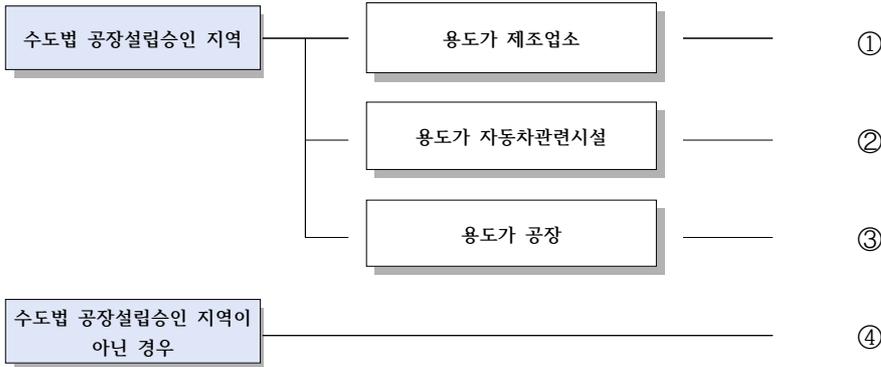
광주시 수질정책과

외부기관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용인경찰서
- └ 한국도로공사
- └ 한국자산관리공사
- └ 광주시 수질정책과
- └ 한국전력공사
- └ 평택시 수도과
- └ 경기도 도로정책과
- └ 용인소방서
- └ 교육지원청
-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 └ 국방시설편부
- └ 한국부동산원
- └ 평생교육건강과
- └ 경기도환경관리사무소
- └ 한국수자원공사
- └ 교육시설과
- └ 교육지원청
- └ 한국농어촌공사
- └ 한강유역환경청
- └ 군부대
- └ 기획경영과

1 협의목적

- 모현읍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의 제조업소(공장) 허가시 「수도법」 등 협의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① 수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제조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인 요건 검토결과 1)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화학물질관리법」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제조장 등 제조시설 포함)인 경우 입지 불가함(단, 폐수 무방류배출시설, 전량 위탁처리시설은 제외). 2) 상기 1항에 부합하고 다음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하수처리구역에 설립되는 공장으로 발생하는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공장일 경우 가능 나) 오수발생량이 1일 10m³ 미만일 경우 가능 다) 오수발생량이 1일 10m³ 이상일 경우 「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3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중 처리용량이 50m³/일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계속하여 유지 수 있는 공장일 경우 가능 3)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대로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공장을 설립한자의 준수사항인 오염사고 대비 오수·폐수 외부유출 차단시설 및 집수시설 설치하는 조건으로 가함. ○ 상기 검토결과를 준수하고, 승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 가능하며, 최종 승인 시에는 우리시에 관련사항을 통보하여 주시고, 통보한 자료는 「수도법」제7조의3(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제8조의2(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등 관리 자료로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② 수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자동차관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설립승인지역 내 제2종근린생활시설(정비공장, 세차장)은 수도법제7조의2에 저촉없으나, 제조업소·공장일 경우 입지 제한 또는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을 준수해야 하므로 주관부서는 건축물 용도를 확인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③ 수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인 요건 검토결과 1) 수도법에 따라 2010년 11월26일 당시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기존 산업단지 밖에 있는 공장으로 한정한다)이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2010년 11월26일 당시 해당 공장부지면적의 범위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 등 공장 외의 공장으로 변경하는 행위 나)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장의 업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 등 공장 외의 공장으로 변경하는 행위 다) 수도법 시행령개정(2010.11.26.) 이전에 설치된 공장은 이후 등록취소에도 불구하고 기존공장으로 인정함(최초 공장설립 이후 기타 용도로의 변경 없이 계속 공장용도인 조건에 한함) 2) 이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2조의2 및 제3조의 규정은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수도법 시행령 개정(2010.11.26) 이전에 이미 설립된 기존공장에 적용되지 않음. 3) 상기 1항에 부합하고 다음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하수처리구역에 설립되는 공장으로 발생하는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공장일 경우 가능 나) 오수발생량이 1일 10m³ 미만일 경우 가능 다) 오수발생량이 1일 10m³ 이상일 경우 「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3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중 처리용량이 50m³/일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계속하여 유지 수 있는 공장일 경우 가능
④ 수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이 아닌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설립승인지역이 아닌 경우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용인경찰서 | └ 한국도로공사 | └ 한국자산관리공사 |
| └ 광주시 수질정책과 | └ 한국전력공사 | └ 평택시 수도과 | └ 경기도 도로정책과 |
| └ 용인소방서 | └ 교육지원청 |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 └ 국방시설본부 |
| └ 한국부동산원 | └ 평생교육건강과 | └ 경기도환경관리사무소 | └ 한국수자원공사 |
| └ 군부대 | └ 도로교육지원청 | └ 한국농어촌공사 | └ 한강유역환경청 |
| | └ 교육시설과 | | |
| | └ 교육지원청 | | |
| | └ 기획경영과 | | |

1

협의목적

- 건축허가 동의대상 특정소방대상물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법」 협의

건축허가 동의 특정소방대상물

①

건축허가 동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닐 경우

②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① 건축허가 동의대상일 경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건축허가 동의를 요구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동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② 건축허가 동의대상이 아닌 경우	<p>○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605-1번지 (주)동성식품 건축물(증축) 건축(공장) 허가 신청에 따른 관련법 을 검토한 바, 소방시설의종류가 추가로 설치되지 아니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건축허가 동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제2항에 의거 건축허가 등 동의대상에서 제외됨</p> <p>○ 금회 신청 대상인 도시형생활주택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1호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허가 동의대상에서 제외됨을 통보하였으며,</p> <p>○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제1항 및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제5조에 의거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관한 규칙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소방관진입창'을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p> <p>○ 금회 신청 대상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1호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허가 동의대상에서 제외됨을 통보하였으며,</p> <p>○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단독주택 및 동법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제1항 및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제5조에 의거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소방관진입창을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182번지 주식회사용남기협 소유주의 증축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바, 금회 증축으로 소방시설의 종류가 추가로 설치되지 아니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건축허가 동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제2항 의거 건축허가 등 동의대상에서 제외</p> <p>○ 금회 신청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400㎡ 미만이고, 설치되는 소방시설이 경미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건축허가 동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바가 없어 건축허가 등 동의대상에서 제외됨</p>

- | | | | |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용인경찰서 | └ 한국도로공사 | └ 한국자산관리공사 |
| └ 광주시 수질정책과 | └ 한국전력공사 | └ 평택시 수도과 | └ 경기도 도로정책과 |
| └ 용인소방서 | └ 교육지원청 |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 └ 국방시설본부 |
| └ 한국부동산원 | └ 평생교육건강과 | └ 경기도환경관리사무소 | └ 한국수자원공사 |
| └ 군부대 | └ 도로교육지원청 | └ 한국농어촌공사 | └ 한강유역환경청 |
| | └ 교육시설과 | | |
| | └ 교육지원청 | | |
| | └ 기획경영과 | | |

1 협의목적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성능지표서 검토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①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닐 경우

②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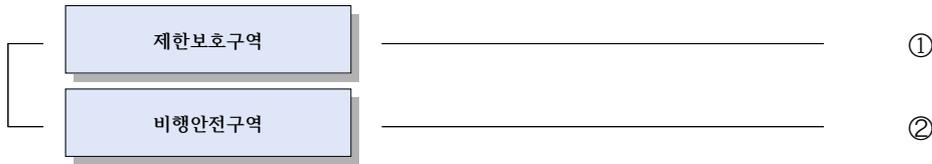
변수	협의조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사항 : 해당사항 전체 정상 - 에너지성능지표 : 70점(건축물허가조건 65점 이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닐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사항 : 1~3동 해당사항 전체 정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성능지표검토서의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제5호' 대상 건축물로 검토 제외 ○ 의무사항 : 해당사항 전체 정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성능지표검토서의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제5호 대상 건축물로 검토 제외) ○ "건축허가도서 검토결과, 증축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 대상임. 관련근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허가도서 검토결과, 냉난방 면적 500㎡미만의 자동차관련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7~26호)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예외 대상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제3항 대상 건축물로 제출 예외대상임.(단, 추후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 "건축허가도서 검토결과, 연면적 합계 500㎡ 미만으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공간 연면적 합계 제외. (관련근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2항5호) (단, 추후 외기 개방된 공간에 창호, 셔터 등이 변경되거나 설치되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 건축허가도서 검토결과, 단독주택으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건축허가도서 검토결과, 연면적 합계 500㎡ 미만으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공간 연면적 합계 제외. (관련근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2항5호) (단, 추후 외기 개방된 공간에 창호, 셔터 등이 설치되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으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임 - 비주거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는 500제곱미터 미만임 - 법적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외부기관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용인경찰서
- └ 한국도로공사
- └ 한국자산관리공사
- └ 광주시 수질정책과
- └ 한국전력공사
- └ 평택시 수도과
- └ 경기도 도로정책과
- └ 용인소방서
- └ 교육지원청
-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 └ 국방시설본부
- └ 한국부동산원
- └ 평생교육건강과
- └ 경기도환경관리사무소
- └ 한국수자원공사
- └ 군부대
- └ 도로교육지원청
- └ 한국농어촌공사
- └ 한강유역환경청
- └ 교육시설과
- └ 교육지원청
- └ 기획경영과

1 협의목적

- 제한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내 행위제한에 대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협의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① 토지이용계획이 제한보호 구역일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한고도 이내의 건물 높이 준수 (해발 건물고, 계획지반고, 시설물 최고 높이 명시) 용인기지의 활주로·유도로 기타 기지의 중요시설이나 항행안전시설 또는 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항공기를 향하여 물리적 손상을 가하거나 기타 제반 항공 운영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부대장의 허가 없이 군부대의 형상에 대한 측량·촬영·묘사 또는 녹취 및 이에 관한 도서의 발간·복제 행위 금지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식에 방해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의 설치 금지 연막 또는 증기발산 및 색채유리 기타 반사물체 진열행위 금지 건물 옥상에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구조물(광고탑, 애드벌룬, 통신장비 등)의 설치 금지 통신전자장비에 대한 전파 영향을 미치는 장비/시설(고출력 장비, 고전압 전파방해 등)의 설치 금지 항공기 소음에 기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 방지를 위한 대책수립 및 소음에 대한 민원 미제기 조건부 허가 공사기간 중에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건설장비(타워 크레인, 공사용 가설체 등)를 사용 시 시설물 최고높이로부터 15m 초과 금지 및 사용기간 명시 공사감리자는 위에서 제시한 조건(해발 건물고, 계획지반고, 건물고,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건설장비에 대한 사용기간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 																																																																																																																																								
② 토지이용계획이 비행안전 구역일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군보심의를 득하여야 함</p> <div style="text-align: right;"> <p>2. 제2항공여단</p> <p>군보 심의결과 통보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15%;">점수번호</td> <td style="width: 15%;"></td> </tr> <tr> <td></td> <td>협의기관</td> <td>처인구</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r> <td rowspan="3" style="width: 15%;">협의개요</td> <td style="width: 15%;">신청인</td> <td colspan="6">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법률 제17164호 일부개정 2020.03. 31.)</td> </tr> <tr> <td>관련근거</td> <td colspan="6">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법률 제17164호 일부개정 2020.03. 31.)</td> </tr> <tr> <td>협의지역</td> <td colspan="6">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향리 278-4 외 2필지</td> </tr> <tr> <td rowspan="2">협의내용</td> <td>협의내용</td> <td colspan="6">건축신고(신축)신경</td> </tr> <tr> <td>협의규모</td> <td>신청면적</td> <td>높이</td> <td colspan="4"></td> </tr> <tr> <td colspan="2"></td> <td>582.45 m²</td> <td>8.15 m</td> <td colspan="4"></td> </tr> <tr> <td colspan="7">심의위원회 의견사항</td> <td style="text-align: center;">동의</td> </tr> <tr> <td>평가요소</td> <td>군사시설 연속 및 훼손 사계</td> <td>하역은 용</td> <td>기동성 보장</td> <td>동상장비 (안)이다</td> <td>주말은 안전거리</td> <td>제한고도</td> <td>유사등화</td> <td>소음/환경</td> <td>대량민원 접수구역</td> <td>기타</td> </tr> <tr> <td>판단</td> <td>A</td> </tr> <tr> <td colspan="11" style="text-align: right;">※ A-양호, B-제한, C-불가</td> </tr> <tr> <td>결과</td> <td colspan="10"> <o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청지역은 이천기지(G-610) 활주로부터 13.47km 이격된 비행안전 제2구역에 위치한 지역으로 항공기 소음 및 진동이 발생 가능한 지역입니다. 관련근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법률 제17164호 일부개정 2020.03. 31.) </td> </tr> <tr> <td>방안</td> <td colspan="10">1. 해당사항이 없습니다.</td> </tr> <tr> <td>상담 연락처</td> <td colspan="10">031-644-3039 (제2항공여단 군사시설보호구역담당)</td> </tr> <tr> <td>유의사항</td> <td colspan="1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 13조 10항에 따라 건축주가 조건부 동의사항(해소방안)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 취소, 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 회복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득하여야 합니다.</td> </tr> </table></div>		점수번호			협의기관	처인구	협의개요	신청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법률 제17164호 일부개정 2020.03. 31.)						관련근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법률 제17164호 일부개정 2020.03. 31.)						협의지역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향리 278-4 외 2필지						협의내용	협의내용	건축신고(신축)신경						협의규모	신청면적	높이							582.45 m ²	8.15 m					심의위원회 의견사항							동의	평가요소	군사시설 연속 및 훼손 사계	하역은 용	기동성 보장	동상장비 (안)이다	주말은 안전거리	제한고도	유사등화	소음/환경	대량민원 접수구역	기타	판단	A	A	A	A	A	A	A	A	A	A	※ A-양호, B-제한, C-불가											결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청지역은 이천기지(G-610) 활주로부터 13.47km 이격된 비행안전 제2구역에 위치한 지역으로 항공기 소음 및 진동이 발생 가능한 지역입니다. 관련근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법률 제17164호 일부개정 2020.03. 31.) 										방안	1.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상담 연락처	031-644-3039 (제2항공여단 군사시설보호구역담당)										유의사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 13조 10항에 따라 건축주가 조건부 동의사항(해소방안)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 취소, 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 회복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득하여야 합니다.									
	점수번호																																																																																																																																								
	협의기관	처인구																																																																																																																																							
협의개요	신청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법률 제17164호 일부개정 2020.03. 31.)																																																																																																																																							
	관련근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법률 제17164호 일부개정 2020.03. 31.)																																																																																																																																							
	협의지역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향리 278-4 외 2필지																																																																																																																																							
협의내용	협의내용	건축신고(신축)신경																																																																																																																																							
	협의규모	신청면적	높이																																																																																																																																						
		582.45 m ²	8.15 m																																																																																																																																						
심의위원회 의견사항							동의																																																																																																																																		
평가요소	군사시설 연속 및 훼손 사계	하역은 용	기동성 보장	동상장비 (안)이다	주말은 안전거리	제한고도	유사등화	소음/환경	대량민원 접수구역	기타																																																																																																																															
판단	A	A	A	A	A	A	A	A	A	A																																																																																																																															
※ A-양호, B-제한, C-불가																																																																																																																																									
결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청지역은 이천기지(G-610) 활주로부터 13.47km 이격된 비행안전 제2구역에 위치한 지역으로 항공기 소음 및 진동이 발생 가능한 지역입니다. 관련근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법률 제17164호 일부개정 2020.03. 31.) 																																																																																																																																								
방안	1.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상담 연락처	031-644-3039 (제2항공여단 군사시설보호구역담당)																																																																																																																																								
유의사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 13조 10항에 따라 건축주가 조건부 동의사항(해소방안)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 취소, 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 회복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득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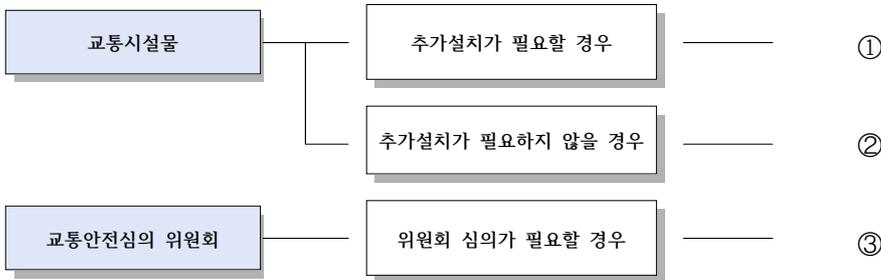
외부기관

용인경찰서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용인경찰서
- └ 한국도로공사
- └ 한국자산관리공사
- └ 광주시 수질정책과
- └ 한국전력공사
- └ 평택시 수도과
- └ 경기도 도로정책과
- └ 용인소방서
- └ 교육지원청
-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 └ 국방시설본부
- └ 한국부동산원
- └ 평생교육건강과
- └ 경기도환경관리사무소
- └ 한국수자원공사
- └ 군부대
- └ 도로교육지원청
- └ 한국농어촌공사
- └ 기획경영과
- └ 교육시설과
- └ 한강유역환경청

1 협의목적

-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시설물 및 도로교통안전 대책 협의
-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협의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① 교통시설물 추가설치가 필요할 경우	<p>나. 회신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지 진출입구 폭 및 회전반경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방도 321호선에서 직진하는 차량들과의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조치 2) 진출입구 전방에 및 천천히 도로교통안전 및 주의 표지판을 병렬 지주식으로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방향 경광등도 함께 설치 검토하고, 역복동 551-7 사업지와 같은 개발 사안으로 보이는바 가감속 차로 확보 가능한지도 검토 바랍니다. 3) 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 교통안전표지(표지판, 노면표시)) 설치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하고 설치 전 우리서와 별도 협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교통 환경 변화 및 민원 등 기타 사유로 교통안전시설물 증감 등이 발생할시 우리서 의견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안전시설물을 우리서 협의 없이 설치 및 이설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 끝.
② 교통시설물 설치계획이 이상이 없을 경우	<p>나. 회신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첨부된 계획도와 같이 공사 시행함에 있어 교통체계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도로교통법에 의거 다음 사항 반영하여 교통처리계획(차로통제, 안전시설물 설치, 신호수 배치 등) 수립하고 공사 시행 3일 전 우리서에 신고 후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사는 반드시 도로공사 신고서에 명시된 시간에만 공사하고 교통량, 공사과다, 도로여건, 민원발생,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차량 및 보행인들의 지장을 주는 행위 기타, 제반사유가 발생 시 즉시 공사를 중단하며 이를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68-69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통보합니다. 끝. <p>○ 첨부된 위치도 및 설계도면을 확인한바 교통체계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련해 도로점용시 재협의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p>
③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필요할 경우	<p>사업지 앞 삼거리를 중앙선 절선을 통한 사업지로의 진출이 가능토록 진출입 계획도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중앙선 전선은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교통체계상 이상 무)</p>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용인경찰서	한국도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시 수질정책과	한국전력공사	평택시 수도과	경기도 도로정책과
용인소방서	교육지원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국방시설본부
한국부동산원	평생교육건강과	경기도환경관리사무소	한국수자원공사
군부대	도로교육지원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강유역환경청
	교육시설과		
	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1 협의목적

- 사업지 인근 한국전력공사 가공배전선로 및 송전선로 시설물 저촉여부 협의

송전선로 인근에서 건축할 시

①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① 송전선로 인근에서 건축할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공급 예정선로 (3상 22,900V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현S/S 외대D/L - 해당 변전소 및 선로는 과부하가 예상되오니 신청 시 별도 협의가 진행되어야 함. ○ 상기 공급 선로는 현재일 기준이며 차후 실 공급 시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 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조성부지 내 한전 가공배전선로가 위치하고 있어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배전선로의 지장이 발생할 경우, 전기사업법 제72조(설비의 이설)에 의거 이설되어야 함. ○ 또한 상기 내용으로 이설업무 진행 시 전력설비 지장물 조서 제출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에 의거 전력설비 손실보상업무 요함. ○ 전력선에 근접하여 비계 설치, 크레인, 펌프카 등을 사용하는 경우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축용방호관을 설치해야함. ○ 해당 사업 진행 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조기에 신청하여 원활하게 전력공급이 진행될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나. 검토결과 : 조건부 건축 가능</p> <p>다. 조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출된 도면에 의거 시공하되 송전선로와 저촉이 없도록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신청내용 변동시 반드시 우리회사와 재협의 하여야 합니다. 2) 공사 완료시까지 전기안전 예방을 위한 한전의 안전지도에 성실하게 협력 하여야 하며, 특히 송전선로 인근 자체 이동 등 중장비(크레인, 펌프카) 사용시에는 반드시 한전 성남전력지사(☎031-780-0351~2)와 사전협의 후 우리회사 안전담당자(한전KPS ☎031-766-4095~6) 입회하에 작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p>3. 안내사항</p> <p>가. 크레인 및 펌프카 등 중장비 작업시 송전선로와 충분한 이격거리(5m 이상)를 확보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비 붐대가 전선에 닿지 않아도 안전이격거리 이내 접근시 섬광과 동시에 감전사고 및 송전설비 정전고장이 발생할 수 있음 ☞ 강풍시 전선 횡진과 여름철 전선 처짐 등 어떤 경우에도 유지하여야 함 <p>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에 명시된 법적 이격거리 미달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73조에 의거 형사적 조치가 따르며, 정전 및 전력설비 피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100조에 의한 형사적 조치 및 민법 제750조에 의거 피해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p>나. 검토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공급 예정선로 (3상 22,900V 기준) 는 해당지역 내 변전소 및 선로는 과부하가 예상되오니 신청 시 별도 협의가 진행되어야 함※ 사전 일정 협의 필요 (소요기간 예측 불가) ○ 상기 공급 선로는 현재일 기준이며 차후 실 공급 시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 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조성부지 내 한전 가공배전선로가 위치하고 있어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배전선로의 지장이 발생할 경우, 전기사업법 제72조(설비의 이설)에 의거 이설되어야 함. ○ 또한 상기 내용으로 이설업무 진행 시 전력설비 지장물 조서 제출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에 의거 전력설비 손실보상업무 요함. <p>다. 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선에 근접하여 비계 설치, 크레인, 펌프카 등을 사용하는 경우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축용방호관을 설치해야함. ○ 해당 사업 진행 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조기에 신청하여 원활하게 전력공급이 진행될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결과 : 조건부 건축 가능

다. 조건

1) 제출된 도면에 의거 시공하되 송전선로와 저촉이 없도록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신청내용 변동시 반드시 우리회사와 재협의 하여야 합니다.

2) 공사 완료시까지 전기안전 예방을 위한 한전의 안전지도에 성실하게 협력 하여야 하며, 특히 송전선로 인근 자재 이동 등 중장비(크레인, 펌프카) 사용시에는 반드시 한전 성남전력지사(☎031-780-0351~2)와 사전협의 후 우리회사 안전담당자(한전KPS ☎031-766-4095~6) 입회하에 작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3. 안내사항

가. 크레인 및 펌프카 등 중장비 작업시 송전선로와 충분한 이격거리(5m 이상)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 중장비 붐대가 전선에 닿지 않아도 안전이격거리 이내 접근시 섬광과 동시에 감전사고 및 송전설비 정전고장이 발생할 수 있음

☞ 강풍시 전선 횡진과 여름철 전선 처짐 등 어떤 경우에도 유지하여야 함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에 명시된 법적 이격거리 미달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73조에 의거 형사적 조치가 따르며, 정전 및 전력설비 피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100조에 의한 형사적 조치 및 민법 제750조에 의거 피해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용인경찰서
- └ 한국도로공사
- └ 한국자산관리공사
- └ 광주시 수질정책과
- └ 한국전력공사
- └ 평택시 수도과
- └ 경기도 도로정책과
- └ 용인소방서
- └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 └ 국방시설본부
- └ 한국부동산원
- └ 도로교육지원청
- └ 경기도환경관리사무소
- └ 한국수자원공사
- └ 군부대
- └ 교육시설과
- └ 교육지원청
- └ 한국농어촌공사
- └ 한강유역환경청
- └ 기획경영과

1

협의목적

- 상대 및 절대보호구역 내 건축물용도 입지제한에 대한 협의

대지가 보호구역에 있을 경우

①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대지가 보호구역 내에 있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ex. 단독주택, 볼링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시설 소재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부터200미터*)에 해당될 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 허용 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 기준을 초과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5,6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저촉되며, - 향후 근린생활시설 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 설치 시 추가 협의 필요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타 법령 저촉여부 확인 필요 - 해당부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서 학교와 인접하여 위치할 경우, 해당 학교와 협의 등을 통하여 소음, 먼지, 공사차량 등으로 인한 학습환경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보호구역(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 중앙유치원(약 17m) - 상대보호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 중앙유치원(약 0m), 능원초등학교(약 101미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이 법률에 저촉되는 시설이 아님 나. 다만, 위 소재지는 중앙유치원 및 능원초등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되므로, 공사진행 시 및 해당 시설 운영 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 허용 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 기준을 초과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5,6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저촉되오니, 관련 법령의 기준초과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 향후 공동주택 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 설치 시 추가 협의 필요 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대상 여부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환경평가 관련 부서: 용인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타 법령 저촉여부 확인 필요 <p>※ 신청부지가 학교와 인접하여 위치하는 만큼, 해당 학교와 협의등을 통하여 소음, 먼지, 공사차량 등으로 인한 학습환경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검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수리점'은 이 법률에 저촉되는 시설이 아님 나. 단, 위 소재지는 기흥초등학교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46m 위치)에 해당되므로, 공사진행시 및 해당 시설 운영 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 허용 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 기준을 초과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5,6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저촉되니, 관련 법령의 기준초과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승인 신청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향후 수리점 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 설치 시 추가 협의 필요 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타 법령 저촉여부 확인 필요 <p>※ 아울러, 신청부지가 학교와 매우 인접하여 위치하는 만큼 해당 학교와 협의등을 통하여 소음, 먼지, 공사차량 등으로 인한 학습환경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검토 의견

가.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는 이 법률 제9조에 저촉되는 시설이 아님

나. 다만, 위 소재지는 동천초등학교의 상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약 69미터 위치)에 해당하므로, 공사진행시 및 해당 시설 운영 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 허용 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 기준을 초과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5,6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저촉되니, 관련 법령의 기준초과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승인 신청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향후 근린생활시설 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 설치 시 추가 협의 필요
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외 타 법령 저촉여부 확인 필요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검토 의견

가. 위 소재지는 죽전초등학교, 대현초등학교(대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죽전중학교 상대보호구역에 해당되어(학교 경계로부터 약 21m, 123m, 140m 위치), 공사 진행 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 허용 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 기준을 초과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5,6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저촉 됨[붙임> 참조]

나. “주유소”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시설 종류에 해당되지 않으나, 동 법률에 해당되는 별도의 시설 또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설치가 제한됨

- 특히, 동 법률 제9조 제14호 관련 가스시설 설치 여부 확인 필요

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외 타 법령 저촉여부 확인 필요

외부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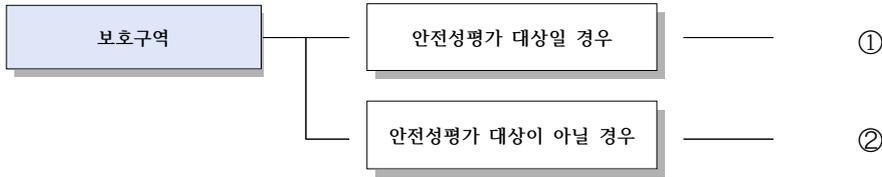
경기도 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용인경찰서
- └ 한국도로공사
- └ 한국자산관리공사
- └ 광주시 수질정책과
- └ 한국전력공사
- └ 평택시 수도과
- └ 경기도 도로정책과
- └ 용인소방서
- └ 교육지원청
-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 └ 국방시설본부
- └ 한국부동산원
- └ 평생교육건강과
- └ 경기도환경관리사무소
- └ 한국수자원공사
- └ 한국부대
- └ 도로교육지원청
- └ 교육시설과
- └ 한국농어촌공사
- └ 한강유역환경청
- └ 교육지원청
- └ 기획경영과

1

협의목적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등에 관한 법」 안전성평가 대상여부 및 기준 협의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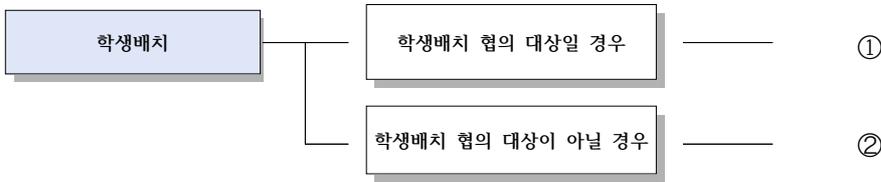
변수	협의조건
① 안전성 평가 대상일 경우	건축허가(신축: 1차 변경) 신청에 따른 재협의[김영*, 상현동 산13-19]와 관련하여 해당 건축물(구조물)의 최고 높이(아파트 장식, 비계 등을 포함)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간 직선거리를 상회하는 바, 「교육 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제4조 3항 2호에 의거 해당건은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안전성 평가 대상이 아닐 경우	<p>「보라동 174-15 외 1」와 관련하여 해당 건축물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간 직선거리가 50미터 초과 공사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1항 3호에 의거 해당 건물은 교육 시설 안전성평가 대상이 아니나 학교 주변의 공사이므로 학생들의 등 하교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등에 관한 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20조에 의거하여 해당 공사는 안전성 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회신하여 드립니다.</p> <p>안전성 평가 대상 아님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초과 * 안전성평가대상 1.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의 건설공사 2.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의 공사 중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공사</p>

경기도 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광주시 수질정책과
- └ 용인소방서
- └ 한국부동산원
- └ 군부대
- └ 용인경찰서
- └ 한국전력공사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도로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 └ 한국도로공사
- └ 평택시 수도과
-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 └ 경기도환경관리사무소
- └ 한국농어촌공사
- └ 한국자산관리공사
- └ 경기도 도로정책과
- └ 국방시설본부
- └ 한국수자원공사
- └ 한강유역환경청

1 협의목적

- 주택공급에 따른 학생배치 기준 협의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① 학생배치 협의대상일 경우	<p>가. 동 개발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초등학교는 인근 용인둔전초에 배치 시 학생배치 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구체적인 학생배치계획이 수립되어야 배치 가능하므로, 입주자모집공고 협의 전까지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나. 중학생은 (가칭) 고유중학교가 2024년 3월 적기개교 시 용인 2중학군 내 학생배치 가능합니다.</p> <p>다. 고등학생은 용인 관내 신설 고등학교 학교용지 확보 시 학생배치 가능합니다.</p> <p>라. 해당 사업 공사추진 및 공사 차량 통행 등에 따른 비산먼지, 석면폐기물, 소음·진동 등의 영향으로 인한 학습권 저해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인둔전초등학교의 의견 청취 등 협의를 거쳐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p> <p>마. 동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유이는 유치원 취학권역 내 기존 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으로 배치 가능합니다.</p> <p>바.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여 통학로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p> <p>사. 교육부의 급당 학생수 정책,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 및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학교설립, 학급당 학생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향후 개발계획 변경 시 반드시 배치계획 재협의를 필요합니다.</p>
② 학생배치 협의대상이 아닐 경우	<p>○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예정지는 학생배치 협의 대상은 아니지만, 귀기관의 건축허가(신축, 개발행위·농지전용 의제) 신청 협의에 따라 검토 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개발사업의 사업추진 및 승인 여부 등은 적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p> <p>가. 초등학교 배치는 인근 능원초등학교에 배치 가능합니다.</p> <p>나. 중학생은 모현중학구에 배치 가능합니다.</p> <p>다. 고등학생은 기존 고등학교에 배치 가능합니다.</p> <p>라. 능원초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행위이나, 최고층 높이가 21층 이하이고, 연면적 10만㎡이하로 교육환경평가 대상은 아닙니다.</p> <p>마.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여 통학로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p> <p>바. 교육부의 급당 학생수 정책,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 및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학교설립, 학급당 학생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향후 개발계획 변경 시 반드시 배치계획 재협의를 필요합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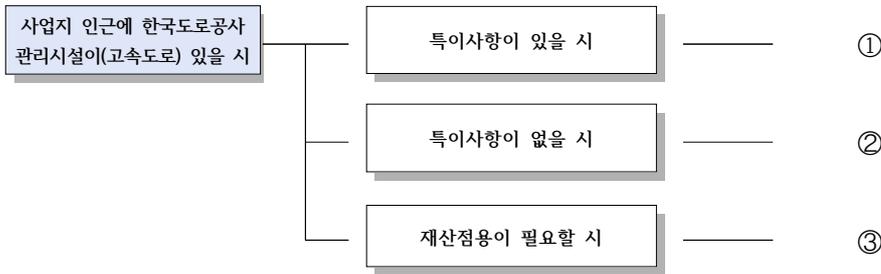
한국도로공사

외부기관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용인경찰서
- └ 한국도로공사
- └ 한국자산관리공사
- └ 광주시 수질정책과
- └ 한국전력공사
- └ 평택시 수도과
- └ 경기도 도로정책과
- └ 용인소방서
- └ 교육지원청
-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 └ 국방시설본부
- └ 한국부동산원
- └ 평생교육건강과
- └ 경기도환경관리사무소
- └ 한국수자원공사
- └ 군부대
- └ 도로교육지원청
- └ 교육시설과
- └ 한국농어촌공사
- └ 한국지역환경청
- └ 교육지원청
- └ 기획경영과

1 협의목적

- 사업지가 고속도로 주변에 있을 시 「고속도로법」에 대한 행위제한 및 소음방지대책 협의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특이사항이 있을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시행시 용지경계를 확인하여 도로부지 및 시설물(수목 등)을 침범·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인접한 도로부지에 공사자재, 가설 컨테이너 적치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고속도로 주변 개발사업(건축허가 등)으로 인하여 고속도로에 야기될 수 있는 소음 및 분진 등 환경문제와 민원은 개발행위 허가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조치하여야 합니다. ○ 해당 건축물의 배수시설은 고속도로 배수시설물과 연결이 불가합니다. ○ 고속도로 소음발생으로 인한 방음 대책은 후발 사업자인 주택사업자(시행자)가 수립하여야 합니다.
특이사항이 없을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 요청주신 건축허가(신축) 협의요청 검토결과, 고속도로의 배수시설과 건축부지의 배수시설이 잇달아 있지 않도록 배수처리 계획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부지는 우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경부고속도로 본선과 인접해 있고, 건축 부지가 경부고속도로보다 높아 우천시 해당 부지의 우수가 우리 고속도로상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공사시 해당 부지에서 고속도로로 우수 유입이 되지 않게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사소관이 필요할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호와 관련하여, 기흥구 신갈동 384-65번지 상의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라 협의 요청주신 사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도로구역 외측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특이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포천(안성~구리)간 건설공사 제8공구를 시행함에 있어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매산리 567-1 외 4필지 중 일부가 현재 고속도로 도로구역과는 저촉되나 향후 신축예정인 건물과 저촉되지 않게 도로구역이 변경될 예정이기에 건축허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협의주신 필지중, 기흥구 하갈동 160-5답 국(국토교통부)의 필지 사용시 도로법에 의거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기흥구 공세동 260-1번지 외 18필지 상의 건축(증축) 허가 대상은 우리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로점용허가 및 토지사용승낙 완료에 따른 추가 협의사항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평택시 수도과

외부기관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용인경찰서
- └ 한국도로공사
- └ 한국자산관리공사
- └ 광주시 수질정책과
- └ 한국전력공사
- └ 평택시 수도과
- └ 경기도 도로정책과
- └ 용인소방서
- └ 교육지원청
-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 └ 국방시설본부
- └ 한국부동산원
- └ 평생교육건강과
- └ 경기도환경관리사무소
- └ 한국수자원공사
- └ 교육시설과
- └ 교육지원청
- └ 한국농어촌공사
- └ 한강유역환경청
- └ 군부대
- └ 기획경영과

1 협의목적

- 용인시 남사읍 지역 제조업소 신축 시 「수도법」에 따른 공장설립기준 협의

수도법 공장설립승인 지역인 경우

①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① 공장설립제한 협의	<p>가. 상기의 지역은 공장 설립승인 지역으로 「수도법 시행규칙」제2조의3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장이어야 합니다.</p> <p>(※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제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공장 2)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장 3) 취수시설의 취수방법이 강변여과수인 지역에 설립되는 공장 4) 1일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p>나. 또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을 갖춘 공장이어야 합니다.</p> <p>다. 「수도법 시행규칙」제3조 제1호에 따라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 시설을 설치하여 오수처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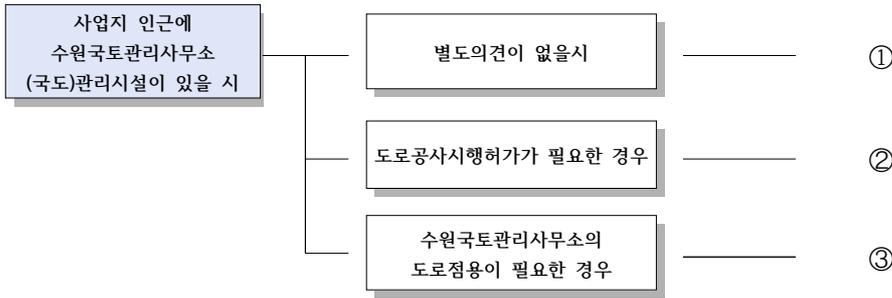
외부기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 | | | | |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용인경찰서 | └ 한국도로공사 | └ 한국자산관리공사 |
| └ 광주시 수질정책과 | └ 한국전력공사 | └ 평택시 수도과 | └ 경기도 도로정책과 |
| └ 용인소방서 | └ 교육지원청 |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 └ 국방시설본부 |
| └ 한국부동산원 | └ 평생교육건강과 | └ 경기도환경관리사무소 | └ 한국수자원공사 |
| └ 군부대 | └ 도로교육지원청 | └ 한국농어촌공사 | └ 한국유역환경청 |
| | └ 교육시설과 | | |
| | └ 교육지원청 | | |
| | └ 기획경영과 | | |

1 협의목적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소관 재산에 대한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협의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①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p>- 동 협의사항은 현행도로(백옥대로2004번길)를 통해 진, 출입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의견없음.</p> <p>가. 건축부지 차랑 진·출입이 귀 시에서 관리하는 시도를 이용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별도 의견없음</p> <p>나. 다만, 건축부지 전면 국도 구간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제3호 교차로금지구간에 저촉되므로 향후 국도 본선을 통한 진·출입 목적의 도로점용(연결)허가는 곤란하며, 건축부지 전면 도로구역을 불법 점용(도로시설훼손, 진·출입 등)하지 않도록 차단 시설(웬스 등) 조치 필요</p>
② 도로공사 시행허가가 필요한 경우	<p>가. 동 협의 사항은 「도로법」제36조에 부합되도록 공사계획 등을 수립하여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신청서 제출 시 검토할 예정임</p> <p>나. 아울러, 동 협의 내용은 신청 시까지 여건 변동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p>
③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소관 재산 도로점용이 필요한 경우	<p>가. 동 협의 구간의 진·출입 계획은 인접한 기점용지(수2337호)에 저촉되므로 기 점용허가자들의 동의(공동사용동의서 등 첨부)를 얻어 「도로법」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부합되도록 공동 진·출입 계획 등을 수립한 후 도로점용(연결)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함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나. 아울러, 동 협의 내용은 신청 시까지 여건 변동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p> <p>가. 동 협의 구간은 「도로법」및「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부합[기존 진·출입로 사용자(기득권자)가 있는 경우 동의서(공동 사용) 포함]되도록 진·출입 계획 등을 수립한 후 우리 사무소로부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신청서 제출 시 검토할 예정임</p> <p>나. 동 협의 내용은 신청 시까지 여건 변동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p> <p>귀 구의 국도42호선 용인시 양지면 양지리 165-1번지 외 4필지 일원 '건축허가(건축개발·농지 의제)에 따른 재협의 요청 [(주)더마이]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p> <p>가. 위 호로 기 회신된 내용과 같이 동 신청지에는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목적의 도로점용(연결)허가(수2837호, 신인 이)' 사항이 있으며, 부동산 매매 등 허가사항 승계가 필요할 경우 「도로법」제106조(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를 받아야 합니다.</p> <p>나. 아울러, 당초 허가사항과 협의요청 도면이 상이한 바, 「도로법」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등에 부합되도록 진·출입 계획을 수립한 후 도로점용(연결) 변경 허가를 득하여야 함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p>

경기도환경관리사무소

외부기관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광주시 수질정책과
- └ 용인소방서
- └ 한국부동산원
- └ 군부대
- └ 용인경찰서
- └ 한국전력공사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도로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 └ 한국도로공사
- └ 평택시 수도과
-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 └ 경기도환경관리사무소
- └ 한국농어촌공사
- └ 한국자산관리공사
- └ 경기도 도로정책과
- └ 국방시설본부
- └ 한국수자원공사
- └ 한강유역환경청

1 협의목적

- 산업단지 내 신축 시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저촉여부 협의

산업단지인 경우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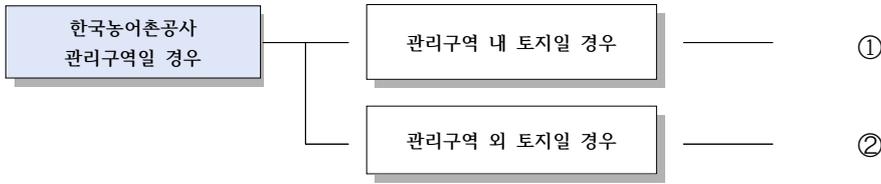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① 산업단지 내 건축허가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사항을 준수할 것 - 제한업종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발암성물질 배출시설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 불가,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 전량위탁 할 경우 입주 허용. 또한 발암성물질 배출시설 입지불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 23조 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득할 것. ○ 폐수배출시설 기허가 사업장이므로 물환경보전법 제 33조 규정에 의거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를 득할 것.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사전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득할 것.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사항을 준수할 것. - 제한업종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발암성물질 배출시설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 불가,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 전량위탁 할 경우 입주 허용)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에 해당하는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 같은 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득할 것.

- | | | |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용인경찰서 | 한국도로공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
| 광주시 수질정책과 | 한국전력공사 | 평택시 수도과 | 경기도 도로정책과 |
| 용인소방서 | 교육지원청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 국방시설본부 |
| 한국부동산원 | 평생교육건강과 | 경기도환경관리사무소 | 한국수자원공사 |
| 군부대 | 도로교육지원청 | 한국농어촌공사 | 한강유역환경청 |
| | 교육시설과 | | |
| | 교육지원청 | | |
| | 기획경영과 | | |

1 협의목적

- 한국농어촌공사 소관 재산 점용허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저촉여부 협의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① 관리구역 내 토지일 경우	<p>가. 신청지는 우리 공사에서 관리하는 경기정리구역내의 농로 및 용·배수로에 연결한 토지입니다.</p> <p>나. 부지조성시 지적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시설부지에서 일정한격 이격시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업생산기반 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조성.관리되어야 합니다.</p> <p>다. 부지조성으로 인한 토사유출과 각종 오염물질이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인근 농경지에 직·간 접적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피해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신청인(관리자) 이 즉시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p> <p>라. 신청부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및 우수는 농촌용수가 오염되어 영농과 농촌 생활환경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화시설(필요시)을 설치하여 신청도면대로 인접한 배수로로 배출하여야 합니다.</p> <p>마. 진·출입로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구거, 농로등)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을 받아야 합니다. (2022.06.22. ~ 2025.06.21. 임대차계약체결)</p> <p>바. 동 건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와 피해보상 및 민원 등은 신청인이 전적으로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p>
② 관리구역 외 토지일 경우	<p>1.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p> <p>가. 본 신청지는 공사관리지역 구역 외 토지입니다.</p> <p>나. 부지조성과 운영으로 인한 토사유출과 각종 오염물질이 인근 농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직·간접적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피해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피해(중차량(4.5ton이상) 통행제한→농로파손 방지)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p> <p>다. 신청부지에서 발생하는 우·오수는 적법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기존 배수로에 연결되어 처리하여야 합니다. - 협의건 검토중에 건축주가 제시한 우·오수계획으로 변경 필요(최종 방류지점 : 용수로→배수로) ○ 하류부 수질관리를 위하여 배출수는 BOD 6ppm이하로 관리하여야 합니다.</p> <p>라. 진·출입로[산72-7(구), 784-2(구), 791-7(구), 791-3(구)] 및 우·오수관로[784-2(구), 780-1(구), 780(구)] 매설부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득하고, 부지사용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가 착공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용허가 신청은 우리지사 사업운영부(☎680-5684)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처리 시 사용허가 처리완료 확인이 필요합니다).</p> <p>마. 마지막으로, 경계측량을 사전에 시행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를 침범하지 않아야 하며, 동 사업 구간내 지장물 및 민원(배수피해, 수질오염, 통행불편 등)에 대하여 원인자부담에 의거 신청자가 해소하여야 합니다.</p>

가. 본 신청지는 공사관리지역 구역 외 토지입니다.

나. 부지조성과 운영으로 인한 토사유출과 각종 오염물질이 인근 농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직·간접적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피해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피해(중차량(4.5ton이상) 통행제한→농로파손 방지)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동 부지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계획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용인시에서 설치한 오수관로에 반드시 연결하여야 하며, 우수는 적법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기존 배수로에 연결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하류부 수질관리를 위하여 배출수는 BOD 6ppm이하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라. 진·출입로 및 우·오수관로[701-3(구), 701-4(도), 703-2(도), 707-3(도), 707-6(전), 707-7(전), 708-1(도), 산 85-2(임), 산86-4(임), 산86-5(임), 706-4(전) 및 706-5(전) 공유토지] 매설부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득하고, 부지사용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가 착공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용허가 신청은 우리지사 사업운영부(☎680-5609)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준공 처리 시 사용허가 처리완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마. 경계측량을 사전에 시행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를 침범하지 않아야 하며, 동 사업 구간내 지장물 및 민원(배수피해 및 수질오염 등)에 대하여 원인자부담에 의거 신청자가 해소하여야 합니다.
- 바. 고매동 산85-2, 산86-4, 산86-5번지는 우리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에 따라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기흥저수지 부지)로, 동 부지(임야)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목적의 사용허가 가능여부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동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의거 농업용수 공급 및 영농경영활동 등의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진·출입로 및 영농, 배관 매설 등의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 아울러, 동 부지는 현재 여방수로 및 사면, 유지관리 도로(농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진·출입로 사용허가를 체결함에 있어 농어촌정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리니 민원사항임을 양지하시어 타법(산림법 등) 검토 후 건축허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한국자산관리공사

외부기관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광주시 수질정책과
- └ 용인소방서
- └ 한국부동산원
- └ 군부대
- └ 용인경찰서
- └ 한국전력공사
- └ 교육지원청
- └ 평생교육건강과
- └ 도로교육지원청
- └ 교육시설과
- └ 교육지원청
- └ 기획경영과
- └ 한국도로공사
- └ 평택시 수도과
-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 └ 경기도환경관리사무소
- └ 한국농어촌공사
- └ 한국자산관리공사
- └ 경기도 도로정책과
- └ 국방시설본부
- └ 한국수자원공사
- └ 한강유역환경청

1 협의목적

-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협의

국유지매각 확인여부가 필요할때

①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① 국유지 매매 여부 확인이 필요할 때	양지면 남곡리 864-10번지 41㎡. 본 재산은 민원인에 매매계약(분납)된 재산으로 해당 건축 등 관련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함.

경기도 도로정책과

외부기관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용인경찰서
- └ 한국도로공사
- └ 한국자산관리공사
- └ 광주시 수질정책과
- └ 한국전력공사
- └ 평택시 수도과
- └ 경기도 도로정책과
- └ 용인소방서
- └ 교육지원청
-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 └ 국방시설본부
- └ 한국부동산원
- └ 평생교육건강과
- └ 경기도환경관리사무소
- └ 한국수자원공사
- └ 군부대
- └ 도로교육지원청
- └ 한국농어촌공사
- └ 한강유역환경청
- └ 교육시설과
- └ 교육지원청
- └ 기획경영과

1 협의목적

- 도로확장을 위한 비관리청 도로공사를 시행할 경우 협의

비관리청 도로공사가 필요할때

①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① 비관리청 도로공사인 경우	도로정책팀:의견없음 지방도계획팀 - 진출입로와 관련 국가지원지방도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공사는 「도로법」제36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에 의한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대상이므로 도로관리청과 별도 협의하기 바람.(단순 점용의 경우 용인시에서 처리) -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구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도로법」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에 따라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함. 민자도로팀:의견없음 도로용지팀:의견없음

국방시설본부

외부기관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광주시 수질정책과
- └ 용인소방서
- └ 한국부동산원
- └ 군부대
- └ 용인경찰서
- └ 한국전력공사
- └ 교육지원청
- └ 평생교육건강과
- └ 도로교육지원청
- └ 교육시설과
- └ 교육지원청
- └ 기획경영과
- └ 한국도로공사
- └ 평택시 수도과
-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 └ 경기도환경관리사무소
- └ 한국농어촌공사
- └ 한국자산관리공사
- └ 경기도 도로정책과
- └ 국방시설본부
- └ 한국수자원공사
- └ 한강유역환경청

1 협의목적

- 사업지가 국방시설본부 소관 도로를 이용할 경우 협의

사업지 인근이 국방부소속 도로가 있을 경우

①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① 사업지인근 도로가 군부대 재산 도로가 있을 경우	해당 소재지는 부대 출입 간 주도로 및 전시 전술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재산으로 도로활용(교통)에 제한을 주는 행위 방지조건 충족시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고, 건축행위를 위한 진출입로 개설은 불가하며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현황 도로로써 통행 또는 사용에 제한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외부기관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광주시 수질정책과
- └ 용인소방서
- └ 한국부동산원
- └ 군부대
- └ 용인경찰서
- └ 한국전력공사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도로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과
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 └ 한국도로공사
- └ 평택시 수도과
-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 └ 경기도환경관리사무소
- └ 한국농어촌공사
- └ 한국자산관리공사
- └ 경기도 도로정책과
- └ 국방시설본부
- └ 한국수자원공사
- └ 한강유역환경청

1 협의목적

- 사업지가 국유재산인 수도용지에 접할 경우 행위제한 및 사용허가 협의

사업지 인근이 수도용지가 있을 경우

①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① 사업내 인근에 수도용지 사용허가가 필요한 경우	협의 요청하신 건축을 위한 토지에 접한 국유지(수도용지)의 사용허가는 건축법에 따른 의제대상이 아니며, 우리공사는 세움터 사이버협의시스템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신청자에게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위해서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국유재산관리자에게 직접 사용허가를 받아야 함을 안내하여 주시고, 향후에도 유사 민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한강유역환경청

외부기관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용인경찰서
- └ 한국도로공사
- └ 한국자산관리공사
- └ 광주시 수질정책과
- └ 한국전력공사
- └ 평택시 수도과
- └ 경기도 도로정책과
- └ 용인소방서
- └ 교육지원청
-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 └ 국방시설본부
- └ 한국부동산원
- └ 평생교육건강과
- └ 경기도환경관리사무소
- └ 한국수자원공사
- └ 교육시설과
- └ 교육지원청
- └ 한국농어촌공사
- └ 한강유역환경청
- └ 군부대
- └ 기획경영과

1 협의목적

-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할 경우 협의

용도가 관광휴게시설(휴게소)인 경우

①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① 용도가 관광휴게시설(휴게소)인 경우	<p>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1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설치계획 승인은 「건축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협의대상이 해당되지 않습니다.</p> <p>- 이에 따라 사업자에게 착공 전 우리 청에 설치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 착공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1 협의목적

- 경기도 건설본부 사업지에 대지가 저촉되는 경우

경기도 건설본부 사업지에 대지가
저촉되는 경우

①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① 경기도 건설본부 사업지에 대지가 저촉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일산리 396-12번지 일원 건축허가(신축, 개발행위의제) 협의 요청과 관련하여, 해당 위치의 토지 및 주택은 “매산~일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잔여지로의 진출입로를 설계에 반영한 사항이며 이 진출입로는 도로계획상 일산2교차로 가감속 차로의 테이퍼에 접속이 되고 기존의 진출입로 위치를 민원요구에 따라 부지 끝단으로 단순 이동하여 설치(도로폭 5m)하는 사항입니다. ○ 또한, 협의요청 자료 검토결과, 도로점용 예정지로 표기되었는바 도로점용 시 설계된 진출입로를 확장하거나 새로이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 따른 교차로 영향권 내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허가권자(처인구청장)가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을 회신합니다.

1 협의목적

- 경수고속도로 사업지 도로점용이 필요한 경우

경수고속도로 사업지 도로점용계획이 있는 경우

①

2 변수에 따른 협의조건

변수	협의조건
① 경수고속도로 사업지 도로점용계획이 있는 경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산93번지 일원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재협의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대지 및 건축 면적 등의 변경에 따른 별도 의견은 없으며, - 용인-서울고속도로 도로구역 내 설치되는 진출입로 및 각종 관로에 대해서는 건축주(이세운)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필지 인근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아가폐종합건설(주)에서 우리 회사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였으며, 허가된 점용부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해당 건축주가 사용하는 것을 동의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관련하여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산92-1번지 일원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재협의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대지 면적의 변경에 대한 별도의견은 없으며 기 협의한 내용대로 진출입로 및 각종 관로 등이 용인-서울고속도로 도로구역 내 설치됨에 따라 도로법 제61조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우리 회사로부터 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안전운영팀-376(2020.3.11.)「건축허가(신축,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의제)신청에 따른 관련법 협의의견 회신」

YONGIN
SPECIAL CITY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